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의 이해

2020. 2.



환 경 부

❏ 목 차 ❏

제1장.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① 추진배경 및 목적	2
② 개정 법령 주요 내용	3

제2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①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제도 개요	7
가. 등급평가 및 표시 대상	7
나.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8
다. 계도기간 및 유예기간	9
라.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 운영 계획	10
②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주체 및 대상 포장재	12
③ 자체평가 사전 준비	17
④ 자체평가 실시	26
가. 자체평가 절차	26
나. 자체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29
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등급	34
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	35
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 단위	35
나. 신청서류 제출	44
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발급	48
⑦ 이의 신청	50

8	평가받은 포장재 · 제품 목록 관리 및 제출	51
가.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관리대장	51
나.	제품 목록 등	53
9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결과 표시	54
가.	표시 대상 및 기준	54
나.	표시기한 연기 신청	59
10	기타(참고자료 등)	61
가.	자체평가 체크 리스트	61
나.	질의 · 회신 사례	70
다.	용어의 정의	84
라.	합성수지 종류	89

제3장. 포장재 재질 · 구조 개선 및 중단 명령

1	개선 명령 및 중단 명령 대상	94
2	포장재 재질 · 구조 개선 추진	96
가.	포장재 재질 · 구조 개선 사전 준비	96
나.	포장재 재질 · 구조 개선 명령 및 이행	97
다.	개선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	100
라.	개선대상 포장재 예외 인정 신청	101
3	제조 · 수입 · 판매 중단 명령	103
4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104

5 기타 105

가. 질의·회신 사례 105

나. 용어의 정의 107

다. 음료류의 종류 109

라. 햄·소시지류의 종류 112

마. 식용유지류의 종류 113

붙임 1.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115

(별첨) 2.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 135

3.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113

4.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 고시) 113

5.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 113

제 1 장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2018.12.23.일 이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재질·구조개선 이행을 확보 할 수 있는 의무조항과 미 준수 시 제재 조항 부재 등 재질·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미비
- 이에, 재질·구조 개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선을 명령하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제조·수입·판매의 중단을 명령(2018.12.24일 자원재활용법 개정·공포, 2019.12.25.일 시행)

□ 목적

-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유도
 -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
 - 분담금 차등화 대상 재질·구조(미정) 중 어느 하나라도 사용할 경우 분담금 단가를 할증
-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
 - 포장재 재질·구조가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경우, 사용금지 등 준수기준을 제시하여 포장재의 자원순환형 생산 확산 추진

□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 제39조의2제1호, 제4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48조제3항제1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부터 제3조의7, 제26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제27조제1항제2호다목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

- (법률)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의무 부여(제9조의2)
- (고시①)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공포(포장재 재활용을 저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선정)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 PVC 계열 재질, 먹는 샘물 및 음료병 용도의 유색 페트병·몸체에서 라벨이 박리되지 않는 페트병 라벨 접착제를 사용금지 대상으로 선정
- 사용금지대상 중 제품 기능에 장애 발생 등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포장재를 사용금지 예외대상으로 선정

□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 (법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제9조의3)
- (시행규칙) ① (의무생산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자체평가 → ② (환경공단) 확인 → ③ (의무생산자) 평가결과 표시 및 제품 목록 제출(제3조의3 및 제3조의4)
 - (의무생산자) 환경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전에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후 환경공단에 검토 신청
 - (환경공단)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필요시 보완 요구, 시험분석, 현장방문 등 실시)
 - (의무생산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평가결과 표시(필요시 9개월까지 표시 추가 연장신청 가능)
- ※ 다만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표시 생략 가능
 - (의무생산자) 평가 받은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목록 등을 제조·수입·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환경공단에 제출
- (고시②) 포장재 재질별 구성항목(도체, 라벨 등)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 설정
 -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 (고시③) 표시 도안 및 위치 등 표시 기준 설정,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보통”에 해당하는 경우 등 평가 결과 표시 생략이 가능한 경우 규정
 -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 사용금지 포장재에 대한 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 (법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한 의무생산자에게 1년(연장 가능)의 범위 내에서 개선명령 조치, 개선명령 미이행시 제조·수입·판매중단 명령 조치(제9조의4)

- (시행규칙)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에 대한 개선명령 및 이행절차, 개선기간 연장 및 중단명령 절차 규정(제3조의5, 제3조의6, 제3조의7)
 - (개선명령) 개선명령서 통보(환경부장관) → 이행계획서 제출(의무생산자, 3개월 이내) → 이행결과 통보(의무생산자, 개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 이행여부 확인(환경부장관)
 - ※ 개선명령 미이행시 환경부장관이 의무생산자에게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조치
 - (개선기간 연장) 개선 기간 연장 신청(생산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검토 결과* 통보(환경부장관, 10일 이내)
 - * 2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 연장 가능
 - (중단명령 절차) 중단명령서 발부(환경부장관) → 제조·수입·판매 중단(의무생산자, 중단기간 종료 또는 중단명령 해제 시까지)

□ 제조·수입·판매중단 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 (법률) 환경부장관이 제조·수입·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단명령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제9조의5)
- (시행령)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규정(제7조의2)
 - (산정기준) 중단기간 × 1일당 과징금*(10억 초과 시 10억으로 함)
 - * 1일당 과징금 = 1일당 출고·수입량 ×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단위비용
 - (부과절차) 부과이유·부과금액 등 서면 통보(환경부장관) → 과징금 납부(의무생산자, 60일 이내)

□ 중단명령 위반 등에 대한 제재수단(벌금 또는 과태료) 마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제39조의2제1호)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제4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 (시행일) 2019.12.25일

제 2 장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제도 개요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포장재 등급*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의무화(분리배출표시와 병기)

*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가 등급평가 및 표시 대상

□ 등급평가 의무 대상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

※ 법적근거: 제9조의3제2항

- 등급평가는 4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급) 모두 받아야 함
- 법 시행 전 제조된 제품(제조일자 기준)은 평가 비대상

□ 평가 결과 표시 의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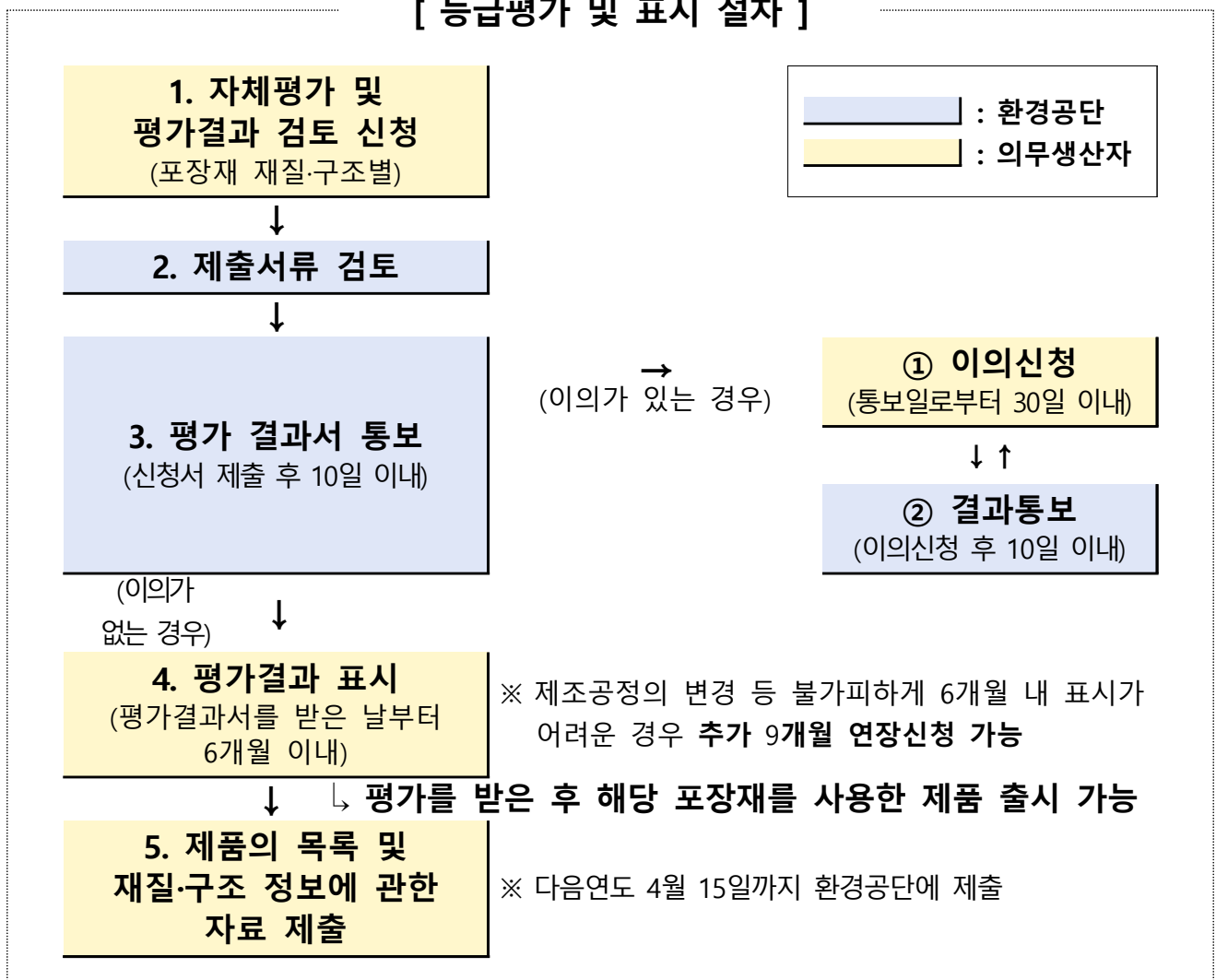
- 등급표시는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최우수, 우수, 보통 등급 포장재는 미표시 가능
- 다만,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PV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는 미표시 가능
 - PV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은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에 해당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함
- 또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멸균팩 등 제품 기능상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표시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는 미표시 가능

나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 평가 및 표시 절차

- ①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 환경공단에 제출
- ② (환경공단) 평가 확인 후 평가 결과서 발급
- ③ (의무생산자) 평가결과 표시 및 제품 목록 제출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다 계도기간 및 유예기간

□ 등급평가 계도기간

- 평가 대상 업체 및 제품·포장재 수 등을 감안, 법 시행 후 9개월간 ('19.12.25~'20.9.24) 계도기간 운영
- 의무생산자가 계도기간(~'20.9.24) 이후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의 재질·구조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
 - ※ 단, '19.12.25 이전부터 제조·수입되고 있던 제품은 '라.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 운영 계획'의 기존제품 등급평가 및 표시 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내 평가신청을 한 경우 과태료 비대상

□ 등급표시 유예기간

- 평가 확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연장신청 시 최장 15개월(9개월 추가연장) 간 등급표시 유예기간 부여
 - ※ 등급표시와 관련된 유예기간은 표시가 의무화된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만 적용(최우수, 우수, 보통은 등급평가 이후 자율 표시)

라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 운영 계획

□ 기존제품*의 포장재 등급평가 및 표시 계획

* 기존제품 : '19.12.25 이전부터 제조·수입되고 있던 제품으로 법 시행 이후 계속 출시되는 제품(제조일자가 '19.12.24까지인 제품은 적용 비대상)

○ (평가 결과서 자동발급 대상) 자체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모든 포장재

- (평가)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할 시 평가 결과서 자동 발급 예정, '20.9.25 이후 평가 결과서를 받지 아니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출시할 경우 과태료 대상

- (표시) 평가 시점과 관계없이 '20.9.24부터 등급표시 유예기간 적용

※ (예시) A포장재에 대해 '20.1.1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자체평가 결과 제출 시, '20.9.24부터 등급표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1.3.24(연장신청 시 '21.12.24)까지 A포장재 사용 제품에 등급을 표시해야 함

○ (평가 결과서 사후발급 대상) 자체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과 '재활용 최우수, 우수' 등급의 유리병, 페트병을 제외한 모든 포장재

- (평가) '20.9.24까지 자체평가 결과 제출 시 '21.3.24까지 평가 확인서를 사후발급 예정으로, '20.9.24까지 환경공단에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 시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과태료 비대상

- (표시) 평가 결과서 발급 전까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표시가 가능하지만(과태료 비대상), 환경공단 평가 확인 결과가 자체평가 결과와 다른 경우 '21.12.24까지 등급표시를 정정하거나, 신규로 표시해야 함

※ (예시1) '20.1.1 B 포장재의 자체평가 결과를 '재활용 우수'로 제출하고 '20.5.1 이를 제품에 표시하였으나, '20.10.1 평가 확인 결과 '재활용 보통' 통보를 받은 경우 '21.12.24까지 등급표시를 정정하거나 삭제해야 함

※ (예시2) '20.1.1 C 포장재의 자체평가 결과를 '재활용 보통'으로 제출하고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1.1 평가 확인 결과 '재활용 어려움' 통보를 받은 경우 '21.12.24까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해야 함

○ (평가 결과서 10일 이내 발급 대상) 자체평가 결과 '재활용 우수' 등급 유리병, 페트병의 포장재

- (평가) 환경공단에 평가접수 후 10일 이내 환경공단에서 평가 결과서 발급 예정으로, '20.9.25 이후 평가 결과서를 받지 아니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출시할 경우 과태료 대상
- (표시) 평가 결과서를 발급 받은 후에 제품에 표시 가능(평가 결과서 발부 전에는 제품에 표시 불가)

□ 등급평가 계도기간 중 출시된 신규제품의 포장재

- 기존제품 포장재의 등급평가 및 표시와 같은 방식으로 등급평가

□ 등급평가 계도기간 종료 후 출시된 신규제품의 포장재

○ 기 평가받은 포장재와 재질·구조가 동일한 포장재 사용제품

- (평가) 별도 평가 없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에 기입 후 출시 가능
- (표시) 기 평가받은 포장재의 표시 유예기간이 끝난 경우 표시 후 출시하여야 하고, 표시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표시 없이 출시 가능하나, 표시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표시 필요

○ 신규 재질·구조 포장재 사용제품

- (평가) 신규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해 환경공단에 평가 접수하여 평가 결과서를 받은 후 출시 가능
- (표시)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연장신청 시 최장 15개월(9개월 추가연장) 간 등급표시 유예기간 적용

2

포장재 재질 · 구조 자체평가 주체 및 대상 포장재

□ 자체평가 주체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업종	규모	
	매출 · 수입액 기준	제품 · 포장재의 출고 · 수입량 기준
1. 종이팩 · 금속캔 · 합성수지재질 (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료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 · 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2.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료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 · 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 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3.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료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 · 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 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이상인 수입업자
4.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5. 받침접시 등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6.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받침접시 · 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업종	규모	
	매출·수입액 기준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7. 발포합성수지재질의 농수축산물 상자와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8.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이상인 수입업자
9.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10.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대형 종합 소매업 및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형 종합 소매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대형 종합 소매업자 및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11.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18조제6호에 따른 윤활유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12.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18조제1호타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 비고

1.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수입액 및 출고·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제1호 및 제2호의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는 제조단계에서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한다.
3. 제4호 및 제5호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자기상표를 부착·표시한 농수축산물을 출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4. 제6호 및 제7호에서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란 음식료품류 및 농수축산물을 간단히 포장하여 출고·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을 말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음식료품류의 제조업자·수입업자와 제4호 및 제5호의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자·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은 제외한다.
5. 제7호에서 "농수축산물 상자"란 제4호 및 제5호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자기상표를 부착·표시하여 출하·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농수축산물 상자를 말한다.
6. 제10호에서 "대형 종합 소매업"이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형 종합 소매업을 말한다.
7. 제10호의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형 종합 소매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1회용 봉투·쇼핑백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8. "연간매출액"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록된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
9. "연간 수입액"이란 수입항도착가격(C.I.F.)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평가 대상 포장재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 포장재

※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포장재의 종류	대상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팩 • 금속캔 • 유리병(빈용기보증금 제품 제외)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트병, 발포합성수지, PSP, PVC - 기타 단일·복합재질 용기류 및 트레이,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료품 • 농·수·축산물 • 세제류 •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부탄가스 제품 • 의복류 • 위생용 종이제품 • 고무장갑 •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타 제품(살충제 및 유독물제품의 플라스틱 용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폐기물종량제 봉투는 제외) 	

□ 평가제외 대상 포장재(EPR 비대상)

○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제품·포장재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

□ 평가대상 여부 판단 사례

평가대상	평가 비대상
1. 면도기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도기홀더 및 면도날 뚜껑이 면도기에 장착되어 판매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도기홀더와 면도날 뚜껑만 단독으로 판매되는 경우(폐기물부담금 대상)
2. 건전지 등 블리스터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 재질에 한정하되, 트레이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재질
3. 식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푼 (스푼은 별도제품으로 스푼 포장재에 대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4. 의복 액세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말의 상품진열용 플라스틱 고리, 와이셔츠 보형물 등 의복류 부속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등에서 전시 등을 위해 별도로 부착한 의복류 부속품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경기용 장갑(골프장갑, 복싱장갑 등) • 봉제의류제조업 비대상인 고무재질로 된 특수복 포장재
5. 농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상자 윗부분의 합성수지 재질 투명필름 • 발포합성수지 상자 및 테이프, 과일 난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상자, 운송을 위한 송장
6. 의약품 및 의약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초과 또는 30그램 초과한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3

자체평가 사전 준비

□ 포장재 재질·구조별 제품 목록 작성

-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전수 조사하여 포장재별*로 사용된 재질·구조 목록 작성

*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로 구분

- 포장재의 재질·구조가 동일하나 포장재(제품) 크기 등이 다른 경우에는 포장재 재질·구조별로 제품 목록 별도 정리

※ 동일한 포장재 재질·구조 : ⑤. 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 단위 참조

□ (참고) 다중포장재*의 평가 단위 구분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중포장재

-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

- 각각 평가하여야 함(1차 포장재와 2차 포장재의 재질이 다른 경우, 각각 몸체의 기준에 따라 분류)

- 뚜껑과 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

- 몸체의 재질을 기준으로 하여 일체로 평가(뚜껑 등 잡자재*는 포장재의 구성항목 중 하나로서 몸체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평가)

* 포장재 몸체에 편리성 부여 및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병의 손잡이, 캐릭터 마개, 빨대, 제품의 개봉 방지·유통이력 관리 등을 위한 스티커 등이 해당

- 포장재 몸체가 평가 비대상(종이재질 등)이고, 일부분(마개, 잡자재 등)만 합성수지 재질인 경우

1) 필름류가 아닌 단일재질 합성수지 :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 몸체 기준*으로 판단

2) 필름류(단일·복합 모두 포함) 및 복합재질 합성수지 :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포장재 몸체 기준*으로 판단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1 기준

3) 종이, 캔 등에 코팅 용도로 활용된 합성수지 : 평가 비대상

사진 예시			
재질·구조	종이재질 몸체에 합성수지 재질 뚜껑	종이재질 몸체에 합성수지 재질 손잡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포장재(ex. 블리스터형)
포장재 종류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 (참고) 별도 포장 제품*의 평가 단위 구분

* 주 제품을 위한 참조용 물품으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설명서, 규격서, 메모리 카드 등이 해당

○ 주 제품과 별도로 별도 포장 제품의 포장재 몸체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평가



□ (참고)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

○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 또는 검사필증 등

- 수입제품의 한글표시 라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주세법,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

구 분	제품 사진	한글 표시사항	비 고
알루미늄캔			
유리병			
페트병			

- 「인삼산업법」 제17조에 의한 검사필증

농협인삼검사용	자체검사업체용
	

- 벌꿀 등급제 표시필증

구분	표시필증	비고
유리병, 페트병 (벌꿀 제품)		

- 제품의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과 함께 포장재 안에 담겨 제공되는 습기제거제, 산소흡수제, 가스흡수제 등

습기제거제	산소흡수제	가스흡수제	알콜 휘산제
			

□ 포장재 종류별 재질·구조 정보 확인

- 포장재의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로 구분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하거나, 기 보유중인 포장용기(부자재) 재질 정보 취합·정리
 - 공인시험기관*에 재질·구조 평가 대상 포장재를 송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따라 분석 의뢰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환경부고시) 별표 2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허가 서류 등 확인
-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의 재질 정보에 대해서는 포장용기 제조업체 또는 포장 자재 납품업체에 관련 정보 제공 요청
- ※ 기업간 협의를 통해 포장용기 제조업체(자재 납품업체)에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의무생산자(거래업체)에게 일괄 제공 가능하나, 의무생산자가 평가 신청한 대표제품의 포장재에 대한 시험성적서임을 확인되어야 함
- 관계 업체 직인이 찍힌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등 기타 재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포장재 재질·구조 인정서류 예시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별표 2. IV. 판정 방법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서류

재질별 재질·구조 기준	인정 서류 예시
1.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체·라벨·잡자재의 재질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허가증 • 의약품 안전성 테스트 자료 등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 용기·포장에 관한 심의자료 •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포함 • 의무생산자의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포장재 재질 설명서

재질별 재질·구조 기준	인정 서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성수지 재질의 라벨 및 잡자재의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중이 제시된 합성수지(23p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빙자료 제출 생략 가능 새로운 포장기술 개발에 따라 비중이 변경(1이상 → 1미만)된 경우, 비중이 제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비중이 제시되지 않은 합성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중이 제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체의 직접인쇄, 표면코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포장재의 사진 및 의무생산자의 포장재 발주규격서·납품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재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표준색상표와 해당 포장재 비교 사진 무색의 경우, 안료 및 염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포장용기 제조업체 발행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벨의 절취선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포장재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벨·마개·잡자재의 몸체와 분리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 일시, 참여자 별 시험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시험결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 전, 분리 중, 분리 후 사진 첨부

2. 종이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루미늄 첩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포장재 사진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	---

3. 유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개의 구조(일체형 또는 분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포장재의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시험 전, 자체 시험 후
--	--

재질별 재질·구조 기준

인정 서류 예시

4. 페트병

- 알칼리성 분리 가능 접착제 사용여부
- 점(점)착제 도포 면적

-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시험일시, 방법, 시험분석 담당자 등이 제시된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 라벨 미제거(박리) 플레이크 세척품 잔존율(%) 및 라벨 비중 분리율(%) 산정 결과(0.01g 단위까지 측정)
 - 3D 스캐너, imagej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해당부위 면적 계산 결과
- * 미국 국립 건강보건원(NIH)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JAVA기반의 오픈소스 이미지 처리 및 분석 프로그램

5.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 알루미늄 두께

-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 의무생산자의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포장재 재질 설명서

※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는 공급받는 자(재활용의무생산자)와 포장재 재질·구조의 정보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

○ 주요 합성수지의 비중(출처 : 기구 및 용기포장 이행물질 분석법 해설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합성수지명	비중	합성수지명	비중
ABS	1.02~1.08	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LDPE: 0.92 • LDPE: 0.92 • HDPE: 0.95
아크릴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MA: 1.17~1.20 • PMMA: 1.19(밀도) 	PEEK	1.32
경화폴리에스터수지	1.12(밀도)	PEN	1.34(밀도)
EP	1.2~1.3	PES	1.37
EVA	0.93~0.96	PLA	1.152
HBP	1.25	PET	1.41
F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TFE: 2.2 • PCTFE: 2.12 • PVDF: 1.78(밀도) 	PF	1.32~1.45
이오노머수지	0.97	PP	0.902~0.907(밀도)
MABS	1.08	PPE	1.16
MF	1.48~1.50	PI	1.31
MS	1.08~1.13	PPS	1.57
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6: 1.13 • PA66: 1.14 • PA12: 1.02 	PMP	0.83
PAN	1.18(밀도)	POM	1.39
PASF	1.37	UF	1.5
PAR	1.20~1.37	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PS: 1.04~1.05 • HIPS: 1.04
PB-1	0.86~0.91	PU	1.03~1.5
PBSA	1.34	PVA	1.27~1.31
PC	1.2	PV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5~1.77(비결정) • 1.80~1.97(결정)
PBT	1.32~1.66	PV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 V C (h a r d) : 1.3~1.6 • P V C (s o f t) : 1.20~1.70
PCT	1.39~1.42		

□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육안분석 등 자체시험계획 수립

○ 평가 참여자, 평가대상 제품의 포장재, 평가항목, 추진일정 등 포장재 재질·구조에 따라 육안분석 및 자체시험 세부추진계획 수립

- 평가참여자에 대해 포장재 재질·구조 판정 시험방법 사전교육 실시
-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는 육안분석 및 자체시험 대상에서 제외
- 포장재 재질·구조별 육안분석 및 자체시험 실시 항목

구 분	포장재 구성항목	평가대상 재질·구조	비 고	
종이팩	몸체	알루미늄 첩합 구조	육안분석	
		미표백 펄프 유무	자체시험	
	마개 및 잡자재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 구조물 존재 유무	육안분석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자체시험	
유리병	몸체	색상	육안분석	
		표면코팅 또는 도색 여부	육안분석	
	라벨	재질	육안분석	
		절취선 유무	육안분석	
		접착제 사용 및 분리가능 여부	육안분석	
		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육안분석	
	마개 및 잡자재	합성수지를 덧씌운 마개	육안분석	
		금속재질 유무	육안분석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자체시험	
		마개 구조(뚜껑·테 일체형 또는 분리형)	자체시험	
	철캔	몸체	금속재질 유무	자체시험
		라벨	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육안분석
마개 및 잡자재		금속재질 유무	자체시험	
알루미늄캔	몸체	알루미늄 이외 복합재질 유무	육안분석	
	라벨	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육안분석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자체시험	
	마개 및 잡자재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자체시험	

구 분	포장재 구성항목	평가대상 재질·구조	비 고
발포 합성수지	몸체	복합재질 구조 여부	육안분석
		색상	육안분석
		복합재질 구조의 분리가능 여부	자체시험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육안분석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자체시험
폴리스틸렌 페이퍼(PSP)	몸체	복합재질 구조 여부	육안분석
		색상	육안분석
		복합재질 구조의 분리가능 여부	자체시험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육안분석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자체시험
페트병	몸체	색상	육안분석
		단일재질 여부(변색 유무)	자체시험
	라벨	몸체와 분리 가능구조 여부	육안분석
		접착제 사용 여부	육안분석
		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육안분석
		종이 재질 여부	육안분석
		금속 혼입 여부 여부	육안분석
	마개 및 잡자재	무색 페트 색상	육안분석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육안분석
		몸체와 완전분리 가능여부	자체시험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몸체	페트 재질 색상	육안분석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육안분석
		접착제 사용 여부	육안분석
		빨대 부착 여부	육안분석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자체시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몸체에 직접 인쇄 유무	육안분석
		몸체와 분리 가능여부	자체시험

4

자체평가 실시

가 자체평가 절차

□ 포장재 재질·구조 육안분석 및 자체시험 실시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별표 2(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육안분석 및 자체시험 실시
 - 부록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가이드라인” 참조

□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 평가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의 평가결과를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해당 항목에 체크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포장재 재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육안분석 및 자체시험 결과 확인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등급 판정
 - 구성 항목(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별로 1차 등급 판정 후 구성 항목별 등급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제품 포장재의 종합등급 확정

□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정리

- 포장재 종류별, 재질·구조별로 자체평가 결과를 정리
- 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인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작성에 활용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공단에 제출하는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작성에 활용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아래 양식은 작성 예시이며, 의무생산자가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일련 번호	포장재 종 류	중 합 이 급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제 품 수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1	종이팩	재 활용 우 수	- 알루미늄 첩합 구조 미사용	기기분석	재 활용 우 수	미사용	육안분석	재 활용 우 수	미사용	육안분석	재 활용 우 수	000 외 50개 제품
2	종이팩	재 활용 보 통	- 알루미늄 첩합 구조 미사용	기기분석	재 활용 우 수	미사용	육안분석	재 활용 우 수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이 몸체 중량의 10% 이내	기기분석	재 활용 보 통	000 외 50개 제품
3	종이팩	재 활용 어려움	- 알루미늄 첩합 구조 미사용	기기분석	재 활용 우 수	미사용	육안분석	재 활용 우 수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이 몸체 중량의 10% 초과	기기분석	재 활용 어려움	000 외 50개 제품
4	종이팩	재 활용 어려움	- 알루미늄 첩합 구조	증빙서류 대 체	재 활용 어려움	미사용	육안분석	재 활용 우 수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이 몸체 중량의 10% 이내	기기분석	재 활용 보 통	000 외 50개 제품
5	종이팩	재 활용 우 수	- 알루미늄 첩합 구조	증빙서류 대 체	재 활용 어려움	미사용	육안분석	재 활용 우 수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이 몸체 중량의 10% 초과	기기분석	재 활용 어려움	000 외 50개 제품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일련 번호	포장재 종 류	중합 등급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제 품 수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1	유리병	재 활용 보 통	- 무색 - 표면코팅 또는 도색 미실시	육안분석	재 활용 우 수	종이 라벨	육안분석	재 활용 우 수	-뚜껑·테 일체형 -분리가능한 마개	육안분석	재 활용 우 수	000 외 50개 제품
2	유리병	재 활용 어려움	- 녹색 - 표면코팅 또는 도색 미실시	기기분석 육안분석	재 활용 우 수	절취선을 포함한 비 접 (점) 착 식 합성수지재질	육안분석 기기분석	재 활용 우 수	-뚜껑·테 일체형 -분리가능한 마개	육안분석	재 활용 우 수	000 외 50개 제품
3	유리병	재 활용 어려움	- 무색 - 표면코팅 또는 도색 미실시	기기분석 육안분석	재 활용 우 수	종이 라벨	육안분석	재 활용 우 수	-뚜껑·테 일체형 -분리가능한 마개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마개	육안분석	재 활용 어려움	000 외 50개 제품
4	유리병	재 활용 어려움	- 녹색 - 표면코팅 또는 도색 미실시	기기분석 육안분석	재 활용 우 수	절취선을 포함한 비 접 (점) 착 식 합성수지재질	육안분석 증빙서류 대체	재 활용 우 수	-뚜껑·테 일체형 -분리가능한 마개	육안분석	재 활용 우 수	000 외 50개 제품
5	유리병	재 활용 우 수	- 검은색 - 표면코팅 또는 도색 미실시	육안분석	재 활용 어려움	절취선을 포함한 비 접 (점) 착 식 합성수지재질	육안분석 기기분석	재 활용 우 수	-뚜껑·테 일체형 -분리가능한 마개	육안분석	재 활용 우 수	000 외 50개 제품

나 자체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 종이팩

○ 몸체 2개 항목, 마개 및 잡자재 2개 항목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평가방법	비고
몸 체	- 알루미늄 첩합 구조 여부	- 육안분석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미표백 펄프 여부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마개 및 잡자재	-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 구조물 사용여부	- 육안분석	
	-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 구조물 사용시 종량 및 재질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유리병

○ 몸체 2개 항목, 라벨 3개 항목, 마개 및 잡자재 2개 항목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평가방법	비고
몸 체	- 색상	- 육안분석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표면코팅 또는 도색	- 육안분석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라 벨	- 직접 인쇄 또는 절취선 포함 여부	- 육안분석	
	- 재질(미사용, 종이, 합성수지, 금속혼입)	- 육안분석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합성수지라벨의 접(점)착제 사용 및 분리가능 여부	- 육안분석 - 기기분석 - 자체시험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마개 및 잡자재	- 뚜껑·테 일체형, 뚜껑·테 분리형, 몸체와 분리 가능 여부	- 자체시험	
	-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 마개 여부	- 육안분석 - 기기분석	

□ 철캔

○ 몸체 1개 항목, 라벨 1개 항목, 마개 및 잡자재 2개 항목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평가방법	비고
몸 체	- 금속재질(철) 여부	- 자체시험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라 벨	- 몸체 직접인쇄	- 육안분석	
마개 및 잡자재	- 금속재질(철) 여부	- 자체시험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금속재질(알루미늄) 여부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알루미늄캔

○ 몸체 2개 항목, 라벨 3개 항목, 마개 및 잡자재 2개 항목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평가방법	비고
몸 체	- 금속재질(알루미늄) 여부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알루미늄 이외 복합재질 여부	- 육안분석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라 벨	- 분리 가능 여부	- 자체시험	
	- 몸체 직접인쇄	- 육안분석	
	- 금속재질(알루미늄) 여부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마개 및 잡자재	- 분리 가능 여부	- 자체시험	
	- 금속재질(알루미늄) 여부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일반 발포합성수지

○ 몸체 3개 항목, 라벨, 마개 및 잡자재 3개 항목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평가방법	비고
몸 체	- 색상	- 육안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복합재질 구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 및 분리 가능 여부	- 자체시험 - 육안분석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재질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라 벨, 마개 및 잡자재	- 미사용 또는 몸체 직접인쇄	- 육안분석	
	- 분리 가능 여부	- 자체시험	
	- 몸체와 동일 재질 및 PVC 계열 재질 여부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폴리스틸렌페이퍼(PSP)

○ 몸체 3개 항목, 라벨, 마개 및 잡자재 3개 항목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평가방법	비고
몸 체	- 색상	- 육안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복합재질 구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 및 분리 가능 여부	- 자체시험 - 육안분석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재질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라 벨, 마개 및 잡자재	- 미사용 또는 몸체 직접인쇄	- 육안분석	
	- 분리 가능 여부	- 자체시험	
	- 몸체와 동일 재질 및 PVC 계열 재질 여부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페트병

○ 몸체 3개 항목, 라벨 7개 항목, 마개 및 잡자재 4개 항목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평가방법	비고
몸 체	- 단일재질 또는 복합재질 여부	- 자체시험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색상	- 육안분석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글리콜변성 PET수지(PET-G) 사용유무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라 벨	- 분리 가능 구조(절취선, 가장자리 미도포 등) 여부	- 육안분석	
	- 점(점)착제 사용 여부	- 육안분석	
	- 몸체 직접인쇄(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제외)	- 육안분석	
	- 비중 1미만 여부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열알칼리성 분리 점(점)착제 사용 여부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점착제 도포 기준 충족 여부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재질(합성수지, PVC 계열, 금속혼입)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마개 및 잡자재	- 무색 페트 여부(색상)	- 육안분석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몸체와 완전분리 가능 여부	- 자체시험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비중 1미만 여부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재질(합성수지 재질, PVC 계열)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 몸체 2개 항목, 라벨, 마개 및 잡자재 5개 항목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평가방법	비고
몸 체	- 페트 재질의 색상(무색)	- 육안분석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재질(PET, PET-G, PVC계열, 기타)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몸체가 PET 재질	- 미사용 또는 비접착식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여부	- 육안분석	
	- PVC 계열 재질 여부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몸체가 PET 이외 재질	- 미사용, 몸체 직접인쇄 또는 빨대부착 여부	- 육안분석	
	- 분리 가능 여부	- 자체시험	
	- 재질(합성수지, PVC 계열)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 몸체 3개 항목, 라벨, 마개 및 잡자재 3개 항목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평가방법	비고
몸 체	- 필름·시트류의 알루미늄 두께(20 μ m 이하 여부)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재질(합성수지 이외 재질 병합사용 여부)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PVC 계열 재질 여부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라 벨, 마개 및 잡자재	- 미사용 또는 몸체에 직접 인쇄 여부	- 육안분석	
	- 분리 가능여부	- 자체시험	
	- 재질(합성수지, PVC 계열)	- 기기분석	-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등급

□ 근거 규정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 [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중 평가기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재활용 최우수/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 등급 판정 기준

○ 재활용 우수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재활용 보통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 재활용 어려움

-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의 세부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활용 최우수

- PSP, 페트병 포장재로서 재활용 우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최우수 등급의 조건까지 충족한 경우

□ 판정 방법

- 기기분석, 육안분석 등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판정

□ 재활용 용이성 등급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사례

- 부록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가이드라인” 참조

5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신청

가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신청 단위

□ 종이팩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 · 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 알루미늄 첩합구조 미사용	① 알루미늄 첩합구조 미사용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알루미늄 첩합구조를 사용 - 미표백 펄프 사용	① 알루미늄 첩합구조 사용 ② 미표백 펄프 사용 <u>(미표백 펄프 사용, 알루미늄 첩합 구조 모두에 해당 하는 경우는 하나에만 체크)</u>	어려움	제출 생략
마개 및 잡자재	- 미사용	① 미사용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 PE재질의 몸체와 분리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 구조물(전체 중량의 10% 이내)	① 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② 몸체와 분리불가능한 PE재질의 마개 및 잡자재가 전체 중량(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 포함)의 10% 이내	보통	
	- 몸체와 분리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① 몸체와 분리불가능한 합성 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어려움	제출 생략

□ 유리병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 무색, 갈색, 녹색	① 무색 ② 녹색 ③ 갈색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무색, 갈색, 녹색 이외의 색상 - 표면코팅 또는 도색	① 무색, 갈색, 녹색 이외의 색상 ② 표면코팅 또는 도색	어려움	제출 생략
라 벨	- 미사용(유통기간, 제조일자만 표시된 경우 포함) - 종이재질 - 비접(점)착식 합성수지재질 (절취선 포함)	① 미사용(유통기간, 제조일자만 표시된 경우 포함) ② 종이재질 ③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점)착식 합성수지재질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비접(점)착식 합성수지재질 (절취선 미포함) - 접(점)착식 합성수지재질 (몸체와 분리가능)	① 절취선을 포함하지 않은 비접(점)착식 합성수지재질 ②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능한 경우	보통	
	-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 몸체에 직접 인쇄(유통기간, 제조일자 표시 제외) - 금속혼입재질	①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② 몸체에 직접 인쇄(유통기간, 제조일자 표시 제외) ③ 금속혼입재질	어려움	제출 생략
마개 및 잡자재	- 뚜껑·테 일체형 - 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① 뚜껑·테 일체형 ② 뚜껑·테 일체형 외 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재질 구분 불필요)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마개 - 뚜껑·테 분리형 - 몸체와 분리불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①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마개 ② 뚜껑·테 분리형 ③ 몸체와 분리불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재질 구분 불필요)	어려움	제출 생략

□ 철캔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 금속 철캔	① 금속 철캔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① 철 이외의 복합재질	보통	
라 벨	- 몸체에 직접 인쇄	① 몸체에 직접 인쇄	우수	
	- 라벨 부착	① 라벨 부착 (라벨재질 구분 불필요)	보통	
마개 및 잡자재	- 몸체와 동일한 재질	① 몸체와 동일한 재질	우수	
	- 알루미늄 재질	② 알루미늄 재질	우수	
	- 철, 알루미늄 이외의 재질	① 철, 알루미늄 이외의 재질 (마개, 잡자재, 재질 구분 불필요)	보통	

□ 알루미늄캔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 금속 알루미늄캔	① 금속 알루미늄캔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알루미늄 이외의 복합재질 구조	① 알루미늄 이외의 복합재질 (재질 구분 불필요)	어려움	제출 생략
라 벨	- 몸체에 직접인쇄	① 몸체에 직접인쇄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몸체와 동일한 재질의 라벨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분리가 가능한 라벨	① 몸체와 동일한 재질의 라벨 ②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분리가 가능한 라벨 (재질 구분 불필요)	보통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분리가 불가능한 라벨	①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분리가 불가능한 라벨 (재질 구분 불필요)	어려움	제출 생략
마개 및 잡자재	- 몸체와 동일한 재질	① 몸체와 동일한 재질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분리 가능	①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분리 가능 (재질, 마개, 잡자재 구분 불필요)	보통	
	-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분리 불가능	①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분리 불가능 (재질, 마개, 잡자재 구분 불필요)	어려움	제출 생략

□ 일반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 백색 단일재질	① 백색 EPS ② 백색 EPE ③ 백색 EPP ④ 기타 백색 단일재질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검은색 EPE, EPP	① 검은색 EPE ② 검은색 EPP ③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로서 분리 가능한 경우	보통	
	-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 - 백색 이외의 색상 (검은색 EPE, EPP 제외)	①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로서 분리 불가능한 경우 ② 백색 이외의 색상 <u>(재질, 색상 구분 불필요)</u>	어려움	제출 생략
라 벨, 마개 및 잡자재	- 미사용 -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에 직접 인쇄(부분인쇄)	① 미사용 ② 몸체와 동일한 재질 ③ 직접 인쇄(부분인쇄)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가능	①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가능 <u>(라벨, 마개, 잡자재, 재질 구분 불필요)</u>	보통	
	- 몸체에 직접인쇄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불가능 - PVC 계열의 재질	① 몸체에 직접인쇄 ②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불가능 <u>(재질 구분 불필요)</u> ③ PVC 계열의 재질	어려움	제출 생략

□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 백색 단일재질	① 백색 단일재질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로서 분리가능한 경우	①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로서 분리가능한 경우	보통	
	-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로서 분리불가능한 경우 - 백색 이외의 색상	①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로서 분리불가능한 경우 ② 백색 이외의 색상 (색상 구분 불필요)	어려움	제출 생략
라 벨, 마개 및 잡자재	- 미사용	① 미사용	최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몸체와 동일한 재질로서 분리 가능	② 몸체와 동일한 재질로서 분리가능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분리 가능	③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분리가능(재질 구분 불필요)	우수	
	- 몸체에 직접인쇄(부분인쇄)	④ 직접 인쇄(부분 인쇄)	보통	
	- 몸체와 동일한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	① 몸체와 동일한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불가능		
- 몸체에 직접인쇄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 - PVC 계열 재질	① 몸체에 직접인쇄 ②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 (라벨 재질 구분 불필요) ③ PVC 계열의 재질	어려움	제출 생략	

□ 페트병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 단일재질 무색	① 단일재질 무색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단일재질 녹색(먹는샘물, 음료류 제외)	① 단일재질 녹색(먹는샘물, 음료류 제외)	보통	
	- 글리콜변성 PET 수지 재질 혼합 - 유색 PET병(먹는샘물, 음료류) - 녹색 이외의 유색(먹는샘물, 음료류 제외) - 복합재질	① PET-G 재질 혼합 ② 유색(먹는샘물, 음료류) ③ 녹색 이외의 유색(먹는샘물, 음료류 제외) ④ 복합재질 <u>(색상, 재질 구분 불필요)</u>	어려움	제출 생략
	라벨	- 비중 1미만, 비접(점)착식 라벨 (절취선 有)	① 비중 1미만, 비접(점)착식 라벨(절취선 有)	최우수
- 비중 1미만, 0.5% 미만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 (가장자리 미도포)		② 비중 1미만, 0.5% 미만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사용 (가장자리 미도포 - 절취선 有 포함)		
- 비중 1미만, 분리가능한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사용 (접착제 도포면적 : 전체의 20%, 라벨의 60% 이하)		① 비중 1미만,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사용(접착제 도포면적 : 전체의 20%, 라벨의 60% 이하), (가장자리 미도포 - 절취선 有 포함)	우수	
	- 비중 1미만, 비접(점)착식 라벨(절취선 無) - 비중 1미만, 분리가능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접(점)착제 도포면적 : 전체의 20%, 라벨의 60% 이하), (가장자리 도포) - 비중 1미만,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접(점)착제 도포면적 : 전체의 20%, 라벨의 60% 초과) -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절취선 有)	① 비중 1미만, 비접(점)착식 라벨(절취선 無) ② 비중 1미만,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접(점)착제 도포면적 : 전체의 20%, 라벨의 60% 이하), (가장자리 도포) ③ 비중 1미만,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접(점)착제 도포면적 : 전체의 20%, 라벨의 60% 초과) ④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절취선 有) <u>(색상, 재질 구분 불필요)</u>	보통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절취선 無 또는 가장자리 도포) - 열알칼리성 분리불가능한 점(점)착제 사용 - 직접인쇄(유통기간, 제조일자 표시 제외) - PVC계열의 재질 - 금속혼입재질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절취선 無 또는 가장자리 도포)<u>(재질 구분 불필요)</u> ② 열알칼리성 분리불가능한 점(점)착제 사용 ③ 직접인쇄(유통기간, 제조일자 표시 제외) ④ PVC계열의 재질 ⑤ 금속혼입재질 ⑥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u>(재질 구분 불필요)</u> 	어려움	제출 생략
마개 및 잡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 무색페트 단일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u>(재질 구분 불필요)</u> ② 무색페트 단일재질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 몸체와 완전분리가 가능한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포함된 비중 1미만의 잡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뚜껑, 몸체와 완전분리가 가능한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의 잡자재 ②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포함된 비중 1미만의 잡자재 <u>(재질 구분 불필요)</u>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 PVC 계열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뚜껑, 몸체 모두와 완전 분리 가능한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무색페트 단일재질 제외) ② PVC 계열 ③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뚜껑, 몸체 모두와 완전 분리 가능한 경우 제외) <u>(재질 구분 불필요)</u> 	어려움	

□ 단일재질 용기 · 트레이류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 · 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 단일재질	① PE 재질 ② PP 재질 ③ PS 재질 ④ 기타 단일재질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단일재질 무색 페트	① 단일재질 무색 페트	어려움	제출 생략	
	- 글리콜변성 PET 수지 재질 혼합	① PET-G 수지 혼합			
	- 유색 PET 재질	② 유색 PET 재질			
- PVC 계열	③ PVC 계열				
리벨, 마개 및 잡자재	몸 체 가 P E T	- 미사용 - 비접(점)착식	① 미사용 ② 비접(점)착식 <u>(재질 구분 불필요)</u>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접(점)착식 - 직접인쇄	① 접(점)착식 ② 직접인쇄 <u>(재질 구분 불필요)</u>	보통	
		- PVC 계열	① PVC 계열	어려움	
	몸 체 가 P E T 이 외 재 질	- 미사용 - 몸체에 직접인쇄 - 몸체와 동일한 재질 (몸체가 PE 또는 PP 재질이면서 라벨, 마개 및 잡자재에 몸체와 다른 올레핀 계열(PE, PP 등) 재질이 혼합된 경우 동일한 재질로 인정)	① 미사용 ② 몸체에 직접인쇄 ③ 몸체와 동일한 재질 ④ 몸체와 완전분리 가능한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재질 <u>(재질 구분 불필요)</u>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재질로서 몸체와 완전분리 가능	①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몸체와 분리가 가능 <u>(재질 구분 불필요)</u>	보통	
		-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②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몸체와 분리 불가능하나,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경우 <u>(재질 구분 불필요)</u>		
		- PVC 계열 -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몸체와 분리 불가능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함유된 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	① PVC 계열 ②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몸체와 분리 불가능 <u>(재질 구분 불필요)</u> ③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함유된 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	어려움	제출 생략

□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재질 용기, 트레이류 - 합성수지 필름·시트류 (알루미늄 20μm 이하 사용 포함) 	①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2가지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 ②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합성수지+합성수지 이외 재질) ③ 단일재질 필름·시트류 ④ 복합재질 필름·시트류 (2가지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 ⑤ 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합성수지+합성수지 이외 재질 (알루미늄 제외)) ⑥ 복합재질 필름·시트류(알루미늄 두께 20 μ m 이하)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 필름·시트류 (알루미늄 20μm 초과 사용) 	① 복합재질 필름·시트류(알루미늄 두께 20 μ m 초과)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 이외 재질 병합사용 - PVC 계열 	① 합성수지 이외 재질 병합사용 (알루미늄 재질 20 μ m 이하 사용 미포함) ② PVC 계열	어려움	
라 벨, 마개 및 잡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 - 합성수지 재질 - 몸체에 직접 인쇄 	① 미사용 ② 합성수지 재질 ③ 몸체에 직접 인쇄 <u>(재질 구분 불필요)</u>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몸체와 분리 가능 	①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몸체와 분리 가능 <u>(재질 구분 불필요)</u>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VC 계열의 재질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몸체와 분리 불가능 	① PVC 계열의 재질 ②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몸체와 분리 불가능 <u>(재질 구분 불필요)</u>	어려움	

나 신청서류 제출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신청서류 목록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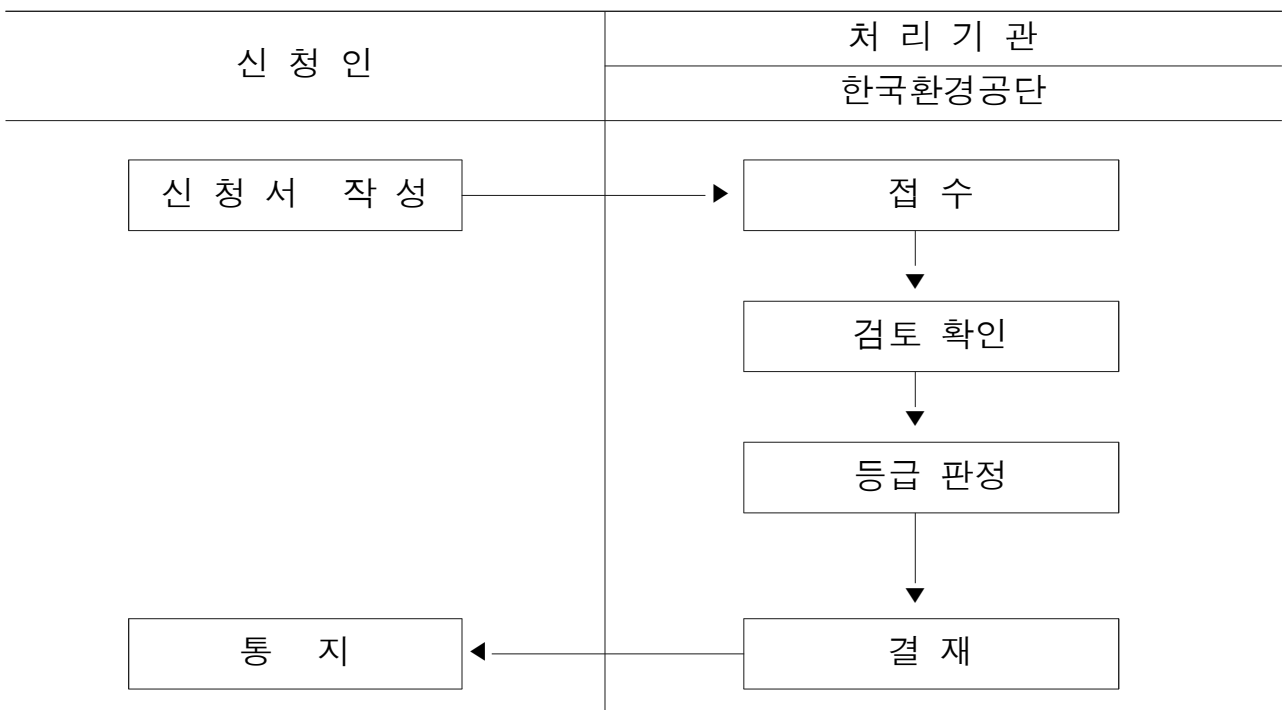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 처리기한 : 10일

□ 처리절차



□ 신청서류 작성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구조	
	③ 자체 평가 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1부 2.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① (포장재 종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별*로 구분하여 작성

* ①종이팩, ② 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합성수지, ⑥폴리스티렌페이퍼(PSP), ⑦페트병, ⑧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② 등급평가 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의 각 종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예: 00몸체 00라벨 00마개)

③ (자체평가 결과) 해당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평가 등급*을 기재

*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일련 번호	포장재 종류 1)	종합등급 2)	몸체			라벨 ³⁾			마개 및 잡자재 ³⁾		
			재질 구조	판정 방법	평가 결과	재질 구조	판정 방법	평가 결과	재질 구조	판정 방법	평가 결과
1	페트병	우수	무색 몸체	육안 판정	우수	종이 라벨	육안 판정	우수	분리 가능	자체 시험	우수
2	페트병	어려움	무색 몸체	육안 판정	우수	접착식 합성 수지	기기 분석	어려 움	분리 가능	자체 시험	우수
...	...										

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 1의 포장재 몸체 재질별*로 구분하여 작성

* ①종이팩, ② 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합성수지, ⑥폴리스티렌페이퍼(PSP), ⑦페트병, ⑧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② 포장재 구성항목별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포장재의 최종 종합 등급(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중 선택)을 기재

③ 구성 항목별 포장재 재질·구조, 판정방법 및 평가결과를 기재

* 라벨 등급이 없거나(종이팩),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합쳐져 있는 경우(일반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폴리스티렌페이퍼,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포장재,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포장재) 라벨칸을 비워두고 기재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 재질·구조별, 구성 항목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 번호 부여 및 편철 또는 증빙서류 목록과 함께 증빙서류 전체 제출

- 자체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생략 가능

□ 신청서류 제출

○ 제출시기

구 분	제출 기한
○ 기존제품*의 포장재 * 기존제품 : '19.12.25 이전부터 제조·수입되고 있던 제품으로 법 시행 이후 계속 출시되는 제품(제조일자가 '19.12.24까지인 제품은 적용 비대상)	○ '20.9.24 - 다만, 자체평가 결과 '재활용 우수' 등급의 유리병·페트병의 포장재의 경우 자체평가 결과 제출 후 평가 결과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제출 필요
○ 계도기간 중 출시된 신규제품의 포장재	○ 기존제품 포장재와 동일
○ 계도기간이 끝난 뒤 출시된 신규제품의 포장재	
- 새로운 재질·구조의 포장재(기존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개선한 포장재 포함)	○ 제품 출시 전(자체평가 결과 제출 후 평가 결과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제출 필요)
- 환경공단의 확인을 받은 기존 포장재와 재질·구조가 동일한 포장재	○ 신청서 제출 비대상

○ 제출처

- 전산시스템(www.iepr.or.kr)을 통해 환경공단에 제출

□ 기타

○ 신규제품 출시 전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관리대장과 신규제품 포장재의 재질·구조 비교·검토
- 기 평가를 받은 포장재의 재질·구조와 동일할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상품명을 추가 기재
- 새로운 재질·구조인 경우, 자체평가를 거쳐 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제출

○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계획 수립 병행

- 사전에 평가결과 표시 계획을 수립하여 동판 또는 몰딩 교체 등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필요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

- 공단 이사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 처리기간의 계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미산입

○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등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발급

○ 발급권자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발급 시기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다만, “기존제품 및 계도기간 중 출시된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서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21.3.24일까지 순차적으로 발급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칙 제3조제2항

- ** ① 유리병, 페트병 중 ‘재활용 우수’ 등급 이상 포장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② 자체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접수 시 자동 발급

○ 양식(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7

이의 신청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구조	
	③ 자체 평가 결과	⑤ 평가 결과서 번호	
	④ 평가 결과		
이의신청 내용	⑥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첨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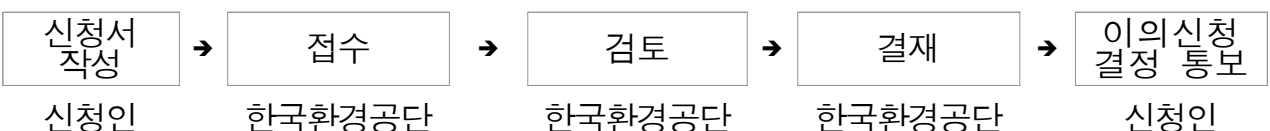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 ① ~ ④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⑤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번호를 기재
- ⑥ 구성항목(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별로 구분하여 첨부서류를 토대로 이의신청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처리절차



□ 처리기한 : 10일

8

평가받은 포장재·제품 목록 관리 및 제출

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을 환경공단으로부터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기록·보관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제2항
 - 환경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보존하는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의 기록·보존을 갈음(대체) 가능

□ 양식(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구조	③ 평가 결과서 번호	④ 평가 결과	상품명(규격)	비고

<작성요령>

① ~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

① (포장재 종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별*로 구분하여 작성

* ①종이팩, ② 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합성수지, ⑥폴리스티렌페이퍼(PSP), ⑦페트병, ⑧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 ②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의 각 종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예: 00몸체 00라벨 00마개 포장재)
- ③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상단의 평가 결과서 번호를 기재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사후발급 대상은 발급 시까지 빈칸으로 관리
- ④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기재된 평가 결과 종합등급 기재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사후발급 대상은 발급 시까지 자체평가 종합등급을 기재

나 제품 목록 등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6항

□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 평가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해당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환경공단에 제출
- 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와 구분하여 별도 제출하되, 계도기간 중 평가를 받은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목록은 2021년 4월 15일까지 제출

□ 양식(「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구조	상 품 명 (규격)	개당 포장재 무게	연간 출고량 (개)	제품/포장재 출고량(kg)	③ 평가 등급	비 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6항에 따라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① (포장재 종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
- ②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의 각 종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
- ③ (평가 등급)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기재된 평가 결과 종합등급 기재
- ④ (기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중량용량산출기초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고 서식은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와 공통 사용 가능

가 표시 대상 및 기준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등급 결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 포장재는 표시 여부 선택 가능

□ 표시 의무 면제 대상 포장재

-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는 평가 결과 미표시 가능

- 다만, PVC 및 PVDC를 사용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에 해당하더라도 평가결과 표시 대상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포장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
 - PVC·PVDC 재질의 필름·시트형 포장재는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대상
-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멸균팩 등 제품 기능상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포장재는 평가결과 미표시 가능
 - 멸균팩, 와인병, 위스키병은 별도의 예외 신청 없이 평가결과 미표시 가능
 - 기타 제품 기능상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포장재는 예외 신청 시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예외로 인정할 경우 평가결과 미표시 가능

□ 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기 준	방 법
표시방법	-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표시색상	-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표시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의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기 타	-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 표시 가능

□ 평가결과 표시 기준일 : 제품 제조일

□ 평가결과 표시 기한 : 제품 제조일

-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를 받은 날 (단, 기존제품 및 계도기간 중 출시된 신규제품의 포장재의 경우 ‘20.9.24)로부터 6개월 이내
 - 6개월 이내에 표시 곤란 시 9개월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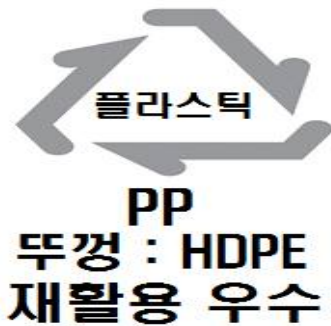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도안

○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 하단에 표시하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랩 : PVC
재활용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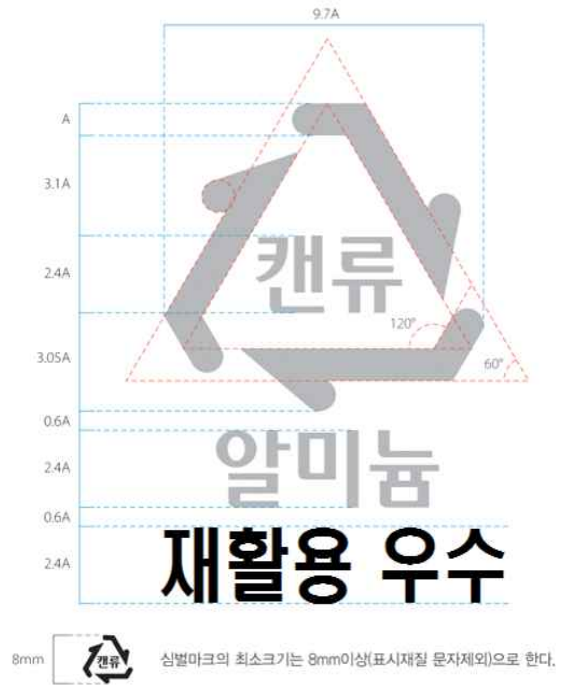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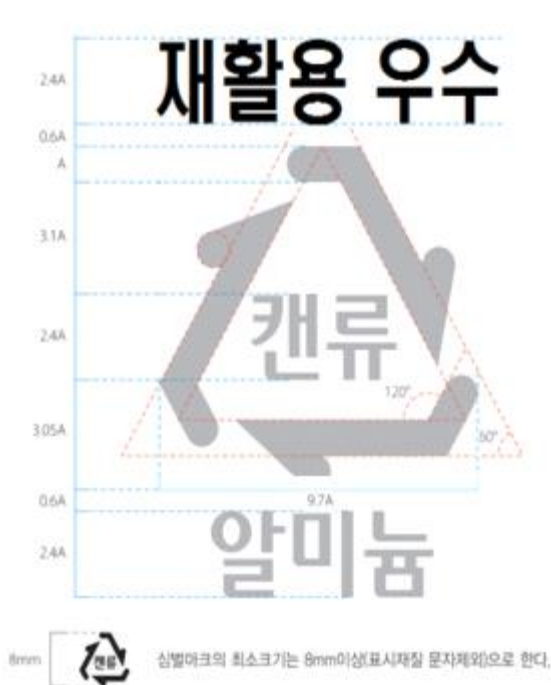
랩 : PVC 재활용 어려움

-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기하는 경우



□ 등급표시 도안 작도 요령

○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 비고 1. 분리배출 심별마크 아래 표시재질 문자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문구의 간격은 0.6A로 한다.
2. 재질·구조 평가 결과 문구 크기는 2.4A로 한다.

○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랩 : PVC 재활용 어려움

랩 : PVC 1A
재활용 어려움 1A

비고 : 문구의 최소 크기는 2mm 이상으로 한다.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내용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상의 평가 결과 종합등급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평가 결과서 번호 제		호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포장재 종류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 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구성항목	평가 결과	평가 등급
몸 체		
라 벨		
마개 및 잡자재		
종 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나 표시기한 연기 신청

□ 신청 대상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가 곤란한 경우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승인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 처리기한 : 10일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10일 전까지 환경공단에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평가 결과서 번호	① 당초 표시 기한	② 변경 표시 기한
	③ 연기신청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기한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④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①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짜
 - 기존제품 포장재의 경우, '21.3.24.
- ② 표시내용 변경 대상 포장재 수, 동판·금형설비 교체기간 등을 고려, 평가결과를 표시한 포장재 사용 제품 제조가 가능한 날짜
 - ※ 당초 표시 기한으로부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신청 가능
- ③ 인쇄 내용 변경을 위한 동판 교체, 금형설비 교체, 선라벨을 후라벨 방식으로 변경을 위한 제조공정 변경 등
 - ※ 다수의 기존제품 동판을 교체할 경우 표시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시 별지로 작성 가능
- ④ (연기신청 사유 증빙서류) 표시내용 변경 절차 및 소요기간 제시, 완료된 절차와 향후 진행될 절차 구분, 대상 포장재 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서류 등
 - 대상제품 수, 동판 신규 제작(교체) 수, 동판 제작기간, 금형설비 교체 수, 금형설비 제작 및 교체기간 등

10 기타(참고자료 등)

가 자체평가 체크 리스트

- 제시된 양식은 예시로서 의무생산자가 자체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 가능하며, 재질·구조 평가방법 확정시 추후 변경 가능
- 포장재 재질별 체크리스트 예시
 - 평가방법 중 기기분석은 자체평가를 위하여 의무생산자(또는 포장용기 제조업체)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은 경우를 의미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제품명			종합평가 등급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구분	평가 재질·구조	평가방법	평가결과	평가 등급
몸체	알루미늄 첩합 구조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미표백 펄프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마개 및 잡자재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사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사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의 몸체 대비 중량 비율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10% 초과 <input type="checkbox"/> 10% 이내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의 재질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PE <input type="checkbox"/> 기타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제품명		종합평가 등급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구분	평가 재질·구조	평가방법	평가결과	평가 등급
몸체	색상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무색 <input type="checkbox"/> 갈색 <input type="checkbox"/> 녹색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표면코팅 또는 도색 여부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라벨	직접 인쇄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합성수지라벨의 절취선 사용여부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사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재질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라벨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종이라벨 <input type="checkbox"/> 합성수지 <input type="checkbox"/> 금속혼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합성수지라벨의 접점착제 사용여부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사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접점착제 사용된 합성수지라벨의 분리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마개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 마개 여부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및	뚜껑·테 구조	<input type="checkbox"/> 자체시험	<input type="checkbox"/> 일체형 <input type="checkbox"/> 분리형	
잡자재	몸체와 분리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자체시험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철캔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제 품 명		종합평가 등 급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구분	평가 재질·구조	평가방법	평가결과	평가 등급
몸체	금속재질(철)	<input type="checkbox"/> 자체시험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라벨	몸체 직접인쇄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마개 및 잡자재	재질	<input type="checkbox"/> 자체시험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철 <input type="checkbox"/> 알루미늄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알루미늄캔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제품명		종합평가 등 급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구분	평가 재질·구조	평가방법	평가결과	평가 등급
몸체	금속재질(알루미늄)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알루미늄 이외 복합재질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라벨	몸체 직접인쇄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분리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자체시험	<input type="checkbox"/> 가 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금속재질(알루미늄)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마개 및 잡자재	분리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자체시험	<input type="checkbox"/> 가 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금속재질(알루미늄)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일반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제 품 명		총 합 평 가 등 급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구 분	평 가 재 질·구 조	평 가 방 법	평 가 결 과	평 가 등 급
몸 체	색 상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백 색 <input type="checkbox"/> 검은색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복 합 재 질 구 조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조합의 경우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 해당	
	복 합 재 질 구 조 의 분 리 가 능 여 부	<input type="checkbox"/> 자체 시험	<input type="checkbox"/> 가 능 <input type="checkbox"/> 불 가 능	
	재 질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E P S <input type="checkbox"/> E P P <input type="checkbox"/> E P E	
라 벨	미 사 용 또 는 몸 체 직 접 인 쇄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라 벨 미 사 용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 해당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마 개	분 리 가 능 여 부	<input type="checkbox"/> 자 체 시 험	<input type="checkbox"/> 가 능 <input type="checkbox"/> 불 가 능	
및	몸 체 와 동 일 재 질 해 당 여 부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 해당	
잡 자 재	PVC 계 열 재 질 사 용 유 무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사 용 <input type="checkbox"/> 미 사 용	

폴리스틸렌페이퍼(PSP)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제품명		종합평가 등 급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최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구분	평가 재질·구조	평가방법	평가결과	평가 등급
몸체	색상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백 색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복합재질 구조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조합의 경우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복합재질 구조의 분리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자체시험	<input type="checkbox"/> 가 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재질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PS <input type="checkbox"/> 기 타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미사용 또는 몸체 직접인쇄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라벨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최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재질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미사용의 경우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PS <input type="checkbox"/> PVC 계열 <input type="checkbox"/> 기 타	
	분리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자체시험	<input type="checkbox"/> 가 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제품명		종합평가 등 급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최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구분	평가 재질·구조	평가방법	평가결과	평가 등급
몸체	색 상 <input type="checkbox"/> 먹는 샘물 및 음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제품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무 색 <input type="checkbox"/> 녹 색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재질	<input type="checkbox"/> 자체시험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단일재질 <input type="checkbox"/> 복합재질	
	클리콜변성 PET수지 (PET-G) 사용유무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사 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라벨	분리 가능 구조 여부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최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몸체 직접인쇄 여부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재질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PVC 계열 <input type="checkbox"/> 합성수지 <input type="checkbox"/> 금속혼입 <input type="checkbox"/> 기 타	
	<합성수지 재질 라벨인 경우>			
	접(점)착제 사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사 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비중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비중 1 이상 <input type="checkbox"/> 비중 1 미만	
	열알칼리성 분리 접 (점)착제 사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사 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라벨면적 대비 접착제 도포 면적 비율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0.5% 미만 <input type="checkbox"/> 60% 이하 <input type="checkbox"/> 60% 초과	
페트병 전체면적 대비 접착제 도포면적 비율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20% 이하 <input type="checkbox"/> 20% 초과		
마개 및 잡자재	재질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색상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무색 페트 <input type="checkbox"/> 무색 외 페트 <input type="checkbox"/> PVC 계열 <input type="checkbox"/> 합성수지 <input type="checkbox"/> 합성수지 이외 재질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완전분리 가능 여부 (합성수지 이외 재질)	<input type="checkbox"/> 자체시험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완전분리 <input type="checkbox"/> 분리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비중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비중 1 이상 <input type="checkbox"/> 비중 1 미만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제 품 명		종합평가 등 급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구 분	평가 재질·구조	평가방법	평가결과	평가 등급	
몸체	<PET 재질>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색상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무 색 <input type="checkbox"/> 유 색		
	PET-G 재질 혼합 사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사 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PET 이외의 재질>				
	합성수지 재질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PVC 계열 <input type="checkbox"/> 기 타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몸체가 PET 재질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사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사 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접착 여부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비접착식 <input type="checkbox"/> 접착식		
	재질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PVC 계열 <input type="checkbox"/> 기 타		
	<몸체가 PET 이외의 재질인 경우>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사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사 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빨대 부착 여부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부 착 <input type="checkbox"/> 미부착		
	몸체 직접인쇄 여부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분리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자체시험	<input type="checkbox"/> 완전분리 <input type="checkbox"/> 가 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몸체와 동일 재질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재질(몸체와 다른 재 질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PVC 계열 <input type="checkbox"/> 합성수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제품명		종합평가 등 급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구분	평가 재질·구조	평가방법	평가결과	평가 등급
몸체	포장재 종류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용기·트레이 <input type="checkbox"/> 필름·시트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알루미늄 두께 (합성수지 필름·시트류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20 μ m 이하 <input type="checkbox"/> 20 μ m 초과	
	합성수지 이외 재질 병합사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PVC 계열 사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사 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사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사 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우수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보통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어려움
	몸체 직접인쇄 여부	<input type="checkbox"/> 육안분석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분리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자체시험	<input type="checkbox"/> 가 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재질	<input type="checkbox"/> 기기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PVC 계열 <input type="checkbox"/> 합성수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나 질의·회신 사례

□ 재질·구조 평가 대상

① 종이박스 등 EPR 비대상 포장제도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재가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 따라서, 종이박스 등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EPR 비대상 포장재는 동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몸체가 종이 재질인 포장재의 일부분에 합성수지 재질(뚜껑 등)이 사용된 경우, 합성수지 재질은 평가 대상임

② 합성수지재질의 세탁비닐 및 1회용 비닐장갑 등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은?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2에 해당되는 필름류는 포장재가 아닌 제품에 해당함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재가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 따라서, 합성수지재질의 세탁비닐 및 1회용 비닐장갑 등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2에 해당하는 필름류 제품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 '19.12.25일 이전 제조한 제품에 대해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여부는?

- 자원재활용법 부칙 제2조(재질·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미적용
 - 참고로, 법 시행일 이후 출시되는 기존제품*은 계도기간내 (~'20.9.24)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제품의 포장재를 '20.9.24일 이후 사용하는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1항제2호의2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됨
 - 기존제품에 대한 평가 결과 표시는 '20.9.24부터 표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1.3.24(연장신청 시 '21.12.24)까지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며, '21.3.25 이후 제조한 제품에 등급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1항제2호의3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됨
- * 기존제품: '19.12.25 이전부터 제조·수입되고 있던 제품으로 법 시행 이후 계속 출시되는 제품(제조일자가 '19.12.24까지인 제품은 적용 비대상)

④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신청시 동일한 재질·구조인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별로 자체평가한 후 환경공단에 평가 신청

⑤ 의무생산자의 상표가 부착된 판촉용 제품(OEM 제품) 포장재의 경우,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포장재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⑥ 국내제조업체인 A사에서 생산한 제품(OEM에 해당되지 않음)을 의무생산자인 B가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코자 구입한 경우, 평가대상 주체?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포장재로서
 - 사은품 제조업체인 A사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A사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함
 - 사은품 제조업체인 A사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 아울러, A사로부터 구입한 사은품을 B사가 재포장(2차 포장)한 경우에는 2차 포장재에 대해 B사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함

⑦ EPR 비대상인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블리스터 포장재(다중포장재)의 자체평가 방법은?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재가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 따라서, 종이재질 포장재는 EPR 비대상 포장재로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합성수지 재질 블리스터 포장재는 트레이*로 분류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 종이, 펄프,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비교적 강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뚜껑 없는 접시형 용기

⑧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른 다중포장재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 각각 평가하여야 하며,
- 뚜껑과 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 몸체의 재질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⑨ 포장재 재질·구조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입증서류 보존기간은?

- 의무생산자가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 또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동조제2항에 따라 마지막 기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 따라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구조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입증서류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의 마지막 기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환경공단의 조사·확인 시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⑩ EPR 신고대상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이 동일한지?

-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대상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업종별 매출·수입액 기준 및 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임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은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임
- 따라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하여야 하는 포장재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은 동일함

⑪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해에 제조·수입·판매하는 제품·포장재의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대상인지 여부?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매출·수입액 등 규모 기준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
-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제조·수입하는 제품·포장재는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비대상임

- 다만, 평가 대상이 되는 해에 환경공단으로부터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의무생산자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평가등급을 포장재 겉면에 표시할 수 있음

⑫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재질·구조 평가 방법은?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 다만, 생분해성수지와 합성수지를 첩합하거나, 병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합재질 합성수지에 해당되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의무생산자가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동조제2항에 따라 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⑬ 종이와 종이팩 구분 및 페트병과 페트용기류 구분 기준?

- 일반종이, 단면코팅, 양면코팅, 단면 부착된 종이의 경우 "종이"로 분류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 ※ 합성수지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종이재질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의 경우 합성수지 복합재질에 해당함
- 종이팩은 우유팩, 주스팩과 같이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 등을 부착하여 액체 등을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이므로 일반 종이와는 구별됨
- 또한, PET용기 중 "목과 마개가 있는 용기"는 PET병으로 분류하고, 목과 마개가 없는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용기류로 분류

⑭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서 제출시기는?

- 전년도 출고·수입량에 따라 당해연도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확인되는 시점*(7.31)으로부터 30일 이내 당해연도 제조·수입한 제품·포장재에 대해 평가 신청(1회에 한하여 30일 추가 연장)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출고·수입량이 확정되는 시기

⑮ 포장재 제조업체와 사용업체 중 평가 신청 주체는?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을 해야 함
 -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수입·판매업자 또는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가 평가신청 주체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

⑯ 수입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공급받는 자 중 평가 신청 주체는?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는 관세 납세의무자가 평가신청 주체에 해당

⑰ 소비자(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지 않는 제품의 포장재도 평가 대상인지?

-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평가 대상임
 - ※ 원료용 B2B 제품, 원재료 수입 포장재를 사용 후 자체 폐기하는 경우 및 자체 소비하는 제품의 포장재 등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EPR 대상 포장재는 모두 평가 대상임

⑱ 무상으로 제공하는 샘플 제품의 포장재는 평가 대상인지?

- 유상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포장재는 평가 대상임

⑲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의 적용기준은?

구 분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평가 신청 기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이전)	제조 전	수입통관 전	판매 전
표시 기준 (평가결과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제조일	제조일	판매일
사용금지 기준	제조일	제조일	판매일
개선명령 이행일 기준	제조일	제조일	판매일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기준	제조일	제조일	판매일

⑳ 평가결과 표시면제 대상 포장재가 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 평가결과 표시 면제 대상 포장재도 평가 대상에 해당

□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① 재활용 용이성 등급의 종류는?

-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등급으로 구분
 - “재활용 최우수” 등급은 PSP, 페트병에 한정되며, 이 경우 우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최우수 등급의 조건까지 충족할 경우에 해당

- “재활용 우수” 등급은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 “재활용 보통” 등급은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관련법령에 의한 필수 표기사항을 스티커 라벨 등에 표시하여 부착하는 경우, 동 라벨이 평가 대상인지?

-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이후 관련법령, 규정(해외 법령, 규정 포함)에 따라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 또는 검사필증 등은 등급 평가 시 해당 라벨 또는 검사필증을 부착하기 전 포장재 재질·구조를 기준으로 등급평가
- ※ 수입제품의 한글표시 라벨, 「인삼산업법」 제17조에 의한 검사필증, 꿀 등급제 표시필증 등

③ 케이블타이, 철 클립, 유리병의 리드, 손장비 등은 포장재 구성항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 잡자재에 해당하며, 해당 포장재 몸체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평가
- ※ 잡자재는 포장재 몸체에 편리성 부여 및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포장재의 구성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병의 손잡이, 캐릭터 마개, 빨대, 제품의 개봉 방지·유통이력 관리 등을 위한 스티커 등이 해당

④ 합성수지병류의 경우, 포장재 종류는 어떻게 분류하는지?

- 합성수지 종류에 따라, 페트병, 단일재질 용기, 복합재질 용기로 구분됨

⑤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의 경우, 색상에 대한 등급 기준은?

- PET재질은 무색이 재활용 우수이고, 유색이거나 PET-G재질이 혼합된 경우에는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
- PET 이외의 단일재질은 색상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음

□ 재질·구조 평가 신청

① 평가 신청서 작성 기준은?

- 포장재의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 구성항목을 평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단위로 평가 신청

②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기존 제품의 포장재와 동일한 재질·구조를 사용한 경우 신청 비대상
 - 이 경우 별도 평가 신청 없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에 기입 후 출시 가능
- 새로운 재질·구조의 포장재를 사용한 경우, 별도 평가 신청 필요

③ 평가신청서에 대한 보완 요구 횟수 및 기간은?

- 의무생산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가 어려울 경우, 환경공단에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 보완 요구 또는 현장방문 등을 실시
 - 아울러, 평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기간 연장 가능

④ 평가신청서 제출서류 중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성적서 등) 등을 토대로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를 파악한 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⑤ 포장재의 평가등급(재질·구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허가 서류,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관계 업체 직인이 찍힌 포장재 발주 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등 기타 재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⑥ 육안판정의 증빙서류는?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별표 2에서 정한 육안판정 가능 항목은 사진, 동영상, 실물 제출 등을 통해 판정결과 입증 가능

⑦ 평가신청서 제출 시 포장재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지?

- 포장재의 라벨, 잡자재 유무 등의 구조 파악을 위해 포장재 사진 제출 필요

⑧ 포장재 재질·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분석 기관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기기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이 가능한 국내외 시험분석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모두 인정

⑨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평가 신청서 수수료는?

- 신청 수수료 없음

⑩ 재활용 어려움 등급인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가 '21.3.24자로 일괄 발급 되는지?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는 평가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평가 결과서 번호가 부여되고 출력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하여 운영중
- ※ 다만, 제도기간 내 평가 결과서를 받은 경우,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과 관계없이 제도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20.3.24) 표시 가능
- 참고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제외한 다른 등급의 포장재는 평가 결과서를 '21.3.24까지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
- 제도기간 내에 해당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평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제도기간 내에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⑪ 사용금지 대상인 PVC재질 포장재에 대해 평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PVC재질 포장재 등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의 경우에도 제도 시행일 ('19.12.25) 이후 해당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출시할 경우 제도기간 내 자체평가 후 평가신청서를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⑫ 다중 포장의 경우, 각각 평가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 내포장, 외포장 등 분리되는 포장재별로 평가 신청

⑬ 제조원·수입국이 다양한 수입제품의 경우 평가 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지?

- 제조원·수입국에 관계없이 포장재 재질·구조별로 평가 신청

⑭ 복합재질 합성수지의 경우, 사용된 재질이 매우 다양함, 사용된 재질에 따라 각각 평가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포장재 몸체 기준으로 재활용 어려움 구조는 2종으로 분류, 그 외 등급은 5종으로 분류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①합성수지 이외 재질 병합사용(알루미늄 두께 20 μ m 초과 포함), ②PVC 계열 재질 사용 등 2종
 - 그 외 등급은 ①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② 단일재질 필름·시트류, ③ 복합재질 필름·시트류(알루미늄 미포함), ④ 복합재질 필름·시트류(알루미늄 두께 20 μ m 이하) 등으로 구분

⑮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기?

- 자원재활용법 제3조의3제6항에 따라 평가받은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최초 제출 기한은 '21.4.15일임

⑯ 시스템 입력 이외에 오프라인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

- 평가 대상자가 공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 신청 및 제품 목록 제출 등 법정민원을 제출하는 경우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으로 장부(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기록 및 보존을 같음

□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①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시기는 ?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표시를 완료하여야 함

(제조공정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6개월 내 표시가 어려울 경우 추가 9개월 표시기한 연기 신청 가능)

- 다만, 제도기간 내 평가 결과서를 받은 경우,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과 관계없이 제도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20.3.24) 표시 가능

② 수입제품의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대상 제품에 대한 기준일은?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여야 함

③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은 ?

-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④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른 다중포장재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 평가결과 표시 방법은?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4조제4호 따라 분리배출표시 상단 또는 하단에 평가결과 일괄표시 가능
- 다만, 평가대상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겉포장)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음

⑤ 내용물이 30ml(또는 30g) 이하인 제품을 다중포장한 경우, 내용물 포장재(1차 포장재)와 외부 포장재(2차 포장재)에 모두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재는 표시를 생략하고 2차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가능

⑥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등급은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재활용 보통” 등급 이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선택사항으로 표시 의무는 없으나,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평가결과 의무 표시 대상임

⑦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포장재에도 평가결과를 표시해야 하는지?

- 폴리염화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 포함)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을 제외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제1호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대상의 경우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⑧ 등급표시 연기신청 시기?

- 표시 기한인 6개월이 도래하기 10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 에 연기신청 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공단에 신청

다 용어의 정의

□ 포장 일반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함 • 포장재 몸체에 주로 사용된 재질에 따라 크게 9가지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종이팩, ②유리병, ③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④일반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⑤폴리스티렌페이퍼(PSP), ⑥페트병, ⑦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⑧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⑨PVC
2	날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개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 용기 등을 물품에 부여하는 기술 또는 그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개 포장, 단위 포장이라고도 하며, 상품으로서 표시 등 정보 전달의 매체로 이용
3	속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화물 내부의 포장으로 물품에 대한 수분, 습기, 광열, 충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 용기 등을 물품에 부여하는 기술 또는 그 상태. 내부 포장이라고도 함
4	겉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화물 외부의 포장으로 물품 또는 포장 물품을 상자, 포대, 나무통, 금속 캔 등의 용기 등에 넣거나 혹은 무용기 상태로 결속하여 기호, 화물 표시 등을 부여하는 기술 또는 그상태. 외부 포장이라고도 함
5	다중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판매 단위의 동일 포장 물품 또는 물품을 2개이상 합친 포장 물품
6	수축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을 1개 또는 여러 개로 합하여 수축 필름으로 덮고, 이것을 가열 수축시켜 물품을 강하게 고정 유지하는 포장 방법
7	다중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
8	일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

□ 포장재 재질별 재활용 용이성 기준

① 공통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합성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 유기 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플라스틱이라고도 하며. 열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유동(流動)에 따라 열가소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로 분류
2	잡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 등에 편리성 부여 및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하여 시술되는 형태로서 주로 대용량 병의 손잡이, 캐릭터 마개 등을 총칭
3	분 리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라벨, 마개 및 잡자재를 몸체에서 분리가 어려운 경우
4	직접 인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 등의 표면에 디자인 또는 표기사항 등을 직접 인쇄한 형태. - 유리병의 경우 스크린 인쇄방식을 이용하여 곡면(曲面)인 몸체에 특수 잉크로 인쇄한 후 가열하여 안료(顔料)를 유리 표면에 융착시키는 방법이 있음
5	PVC 계열의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염화비닐(PVC), 염화폴리염화비닐(PVC-C),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등
6	복합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
7	첩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선할 목적 또는 새로운 기능을 부가할 목적으로 2종류 이상의 필름 또는 지지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맞붙이는 것을 의미
8	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 직물, 종이 등의 편면 또는 양면을 공기·물·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캘린더링·압출·담금(디핑)·분사(스프레이)·칠 등의 가공방법에 의하여 물체의 표면을 도료, 피복하는 것을 의미
9	비접착식 라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을 용기 등에 부착 시 별도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정·유지하는 라벨로서 스트레치 라벨과 슈링크 라벨 등이 있음

② 종이팩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접합	•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이는 것으로 부착과 동일한 의미임
2	접합 알루미늄 박	• 비교적 얇은(0.006~0.03mm) 정도의 알루미늄박을 자외선 차단, 배리어성, 방습 및 열복합성 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종이, 셀로판, 플라스틱 필름 등과 복합한 재료의 총칭

③ 유리병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비접착식 라벨	• 라벨을 용기 등에 부착 시 별도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정·유지하는 라벨로서 스트레치 라벨과 슈링크 라벨 등
2	뚜껑테 일체형	• 뚜껑을 오픈할 경우 뚜껑과 테가 분리되지 않고 열리는 형태
3	뚜껑테 분리형	• 뚜껑을 오픈할 경우 뚜껑과 테가 분리되어 몸체에 테가 남아있는 형태
4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마개	• 금속마개 전체를 합성수지로 덧씌운 마개

④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복합재질	• 캔 몸체를 알루미늄과 철 또는 판지 등을 결합하거나, 플라스틱 필름 등을 적층하여 성형한 캔

⑤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폴리스티렌페이퍼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조합	• 두 개의 다른 어떤 것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6 페트병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복합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트 재질외의 합성수지 재질과 복합된 재질 또는 페트 재질과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로서 페트 재질 외의 재질의 중량이 페트병(뚜껑, 라벨 등 부분품은 제외한다)의 2% 이상인 경우
2	PET-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페트수지로는 제조하기 어려운 투명하고 두꺼운 시트나 용기에 적합하도록 공단량체로 CHDM (1,4-cyclohexanedimethanol)을 첨가하여 공중합한 비결정성 수지
3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과정에서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착제
4	먹는 샘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로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5	샘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샘물로서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
6	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9-31호(식품의약안전처, '19.4.26) - 식품공전 중 9. 음료류 -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로 분류
7	페트병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을 제외한 병 표면적(병구 및 서포트링 포함)
8	접착제 도포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생산·포장 시 라벨 또는 페트병에 도포되는 접(점)착제의 표면적을 의미

7 단일재질 용기 · 트레이류(페트병 및 발포합성수지 제외)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단일재질	• 몸체가 합성수지 종류 중 하나의 수지로만 구성
2	용기	• 물품 또는 포장 물품을 넣을 수 있는 그릇의 총칭
3	트레이	• 종이, 펄프, 플라스틱, 알루미늄 박 등 비교적 강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뚜껑 없는 접시형 용기

8 복합재질 용기 · 트레이 및 단일 · 복합재질 필름 · 시트류(페트병 및 발포합성수지 제외)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복합재질 합성수지	• 합성수지 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을 말함
2	필름	• 두께가 0.25mm 미만의 플라스틱 막 모양인 것
3	시트류	• 두께가 0.25mm 이상인 플라스틱의 얇은 판 모양인 것
4	병합	• 2가지 이상의 물질을 하나로 합침(화학적 결합)

라 단일재질 합성수지 종류

[출처 : KS M ISO 1043-1]

기호	재료	비고
AB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플라스틱	
ABAK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아크릴레이트 플라스틱 (ABA의 추천 기호)	
ABS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플라스틱	
ACS	아크릴로니트릴-(염화폴리에틸렌)-스티렌(ACPES의 추천 기호)	
AEPDS	아크릴로니트릴-(에틸렌-프로필렌-디엔) -스티렌 플라스틱(AEPDMS의 추천 기호)	
AMMA	아크릴로니트릴-(메타크릴산메틸) 플라스틱	
ASA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아크릴레이트 플라스틱	
CA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CAB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	
CAP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CEF	셀룰로오스 포름알데히드	
CF	크레졸-포름알데히드 수지	
CMC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CN	셀룰로오스 니트레이트	
COC	사이클로올레핀 공중합체	
CP	셀룰로오스 프로피오네이트	
CTA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EAA	에틸렌-(아크릴산) 플라스틱	
EBAK	에틸렌-(아크릴산부틸) 플라스틱(EBA의 추천 기호)	
EC	에틸 셀룰로오스	
EEAK	에틸렌-(아크릴산에틸) 플라스틱(EEA의 추천 기호)	
EMA	에틸렌-(메타크릴산) 플라스틱	
EP	에폭시드, 에폭시 수지	
E/P	에틸렌-프로필렌 플라스틱(EPM의 추천 기호)	
ETFE	에틸렌-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플라스틱	
EVAC	에틸렌-(아세트산비닐) 플라스틱(EVA의 추천기호)	
EVOH	에틸렌-(비닐 알코올) 플라스틱	
FEP	퍼플루오로(에틸렌-프로필렌) 플라스틱(PFEP의 추천 기호)	
FF	푸란-포름알데히드 수지	
HBV	폴리(3-히드록시부티레이트)-co-(3-히드록시발레레이트)	
LCP	액정 고분자	
MABS	(메타크릴산메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플라스틱	
MBS	(메타크릴산메틸)-부타디엔-스티렌 플라스틱	
MC	메틸 셀룰로오스	
MF	멜라민-포름알데히드 수지	
MP	멜라민-페놀 수지	
MSAN	α -메틸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플라스틱	

기호	재료	비고
PA	폴리아미드	
PAA	폴리(아크릴산)	
PAEK	폴리아릴에테르케톤	
PAI	폴리아미드이미드	
PAK	폴리아크릴레이트	
PAN	폴리아크릴로니트릴	
PAR	폴리아릴레이트	
PARA	폴리아릴아미드	
PB	폴리부텐	
PBAK	폴리(아크릴산부틸)	
PBD	1,2-폴리부타디엔	
PBN	폴리(부틸렌 나프탈레이트)	
PBS	폴리(부틸렌 숙시네이트)	
PBSA	폴리(부틸렌 숙시네이트 아디페이트)	
PBT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C	폴리카보네이트	
PCCE	폴리(사이클로헥실렌 디메틸렌 사이클로헥산디카르복실레이트)	
PCO	폴리사이클로올레핀	
PCL	폴리카프로락톤	
PCT	폴리(사이클로헥실렌 디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CTFE	폴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틸렌	
PDAP	폴리(디알릴 프탈레이트)	
PDCPD	폴리디사이클로펜타디엔	
PE	폴리에틸렌	
PE-C	염화 폴리에틸렌(CPE의 추천 기호)	
PE-HD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의 추천 기호)	
PE-LD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의 추천 기호)	
PE-LLD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의 추천 기호)	
PE-MD	중밀도 폴리에틸렌(MDPE의 추천 기호)	
PE-UHMW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의 추천 기호)	
PE-VLD	극저밀도 폴리에틸렌(VLDPE의 추천 기호)	
PEC	폴리에테르카보네이트	
PEEK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PEEST	폴리에테르에스테르	
PEI	폴리에테르이미드	
PEK	폴리에테르케톤	
PEN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	
PEOX	폴리(에틸렌 옥시드)	
PES	폴리(에틸렌 숙시네이트)	
PESTUR	폴리에스테르우레탄	
PESU	폴리에테르술폰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기호	재료	비고
PEUR	폴리에테르우레탄	
PF	페놀-포름알데히드 수지	
PFA	퍼플루오로(알킬 비닐 에테르)-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플라스틱	
PHA	폴리히드록시알케노에이트	
PHB	폴리(3-히드록시부티레이트)	
PI	폴리이미드	
PIB	폴리이소부틸렌	
PIR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PK	폴리케톤	
PLA	폴리(젓산)	
PMI	폴리메타크릴이미드	
PMMA	폴리(메타크릴산메틸)	
PMMI	폴리(<i>N</i> -메틸메타크릴이미드)	
PMP	폴리(4-메틸펜트-1-엔)	
PMS	폴리(α -메틸스티렌)	
POM	폴리옥시메틸렌, 폴리아세탈, 폴리포름알데히드	
PP	폴리프로필렌	
PP-E	발포 폴리프로필렌(EPP의 추천 기호)	
PP-HI	내충격성 폴리프로필렌(HIPP의 추천 기호)	
PPE	폴리(페닐렌 에테르)	
PPOX	폴리(산화프로필렌)	
PPS	폴리(황화페닐렌)	
PPSU	폴리(페닐렌 술폰)	
PS	폴리스티렌	
PS-E	발포 폴리스티렌(EPS의 추천 기호)	
PS-HI	내충격성 폴리스티렌(HIPS의 추천 기호)	
PS-S	술폰화 폴리스티렌	
PSU	폴리술폰	
PTFE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PTT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UR	폴리우레탄	
PVAC	폴리(아세트산비닐)	
PVAL	폴리(비닐 알코올) (PVOH의 추천 기호)	
PVB	폴리(비닐 부티랄)	
PVC	폴리(염화비닐)	
PVC-C	염화 폴리(염화비닐) (CPVC의 추천 기호)	
PVC-U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 (UPVC의 추천 기호)	
PVDC	폴리(염화비닐리덴)	
PVDF	폴리(플루오르화비닐리덴)	
PVF	폴리(플루오르화비닐)	
PVFM	폴리(비닐 포름알)	
PVK	폴리(<i>N</i> -비닐카르바졸)	
PVP	폴리(<i>N</i> -비닐피롤리돈)	

기호	재료	비고
SAN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플라스틱	
SB	스티렌-부타디엔 플라스틱	
SI	실리콘 플라스틱	
SMAH	스티렌-(말레산 무수물) 플라스틱 (S/MA나 SMA의 추천 기호)	
SMS	스티렌- α -메틸스티렌 플라스틱	
UF	우레아-포름알데히드 수지	
UP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VCE	(염화비닐)-에틸렌 플라스틱	
VCEMAK	(염화비닐)-에틸렌-(아크릴산메틸) 플라스틱(VCEMA의 추천 기호)	
VCEVAC	(염화비닐)-에틸렌-(아세트산비닐) 플라스틱	
VCKMAK	(염화비닐)-(아크릴산메틸) 플라스틱(VCKMA의 추천 기호)	
VCMMA	(염화비닐)-(메타크릴산메틸) 플라스틱	
VCKOAK	(염화비닐)-(아크릴산옥틸) 플라스틱(VCKOA의 추천 기호)	
VCKVAC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플라스틱	
VCKVDC	(염화비닐)-(염화비닐리덴) 플라스틱	
VE	비닐 에스테르 수지	

제 3 장

포장재 재질 · 구조 개선 및 중단 명령

1

개선 명령 및 중단 명령 대상

□ 사용금지 대상 및 예외 대상 포장재

구분	사용금지 대상 제품·포장재 재질·구조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3조제1항)	사용금지 적용 예외 (사용가능 제품·포장재)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3조제2항)
PVC 및 PV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금지 적용 예외 포장재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 - 폴리염화 비닐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 • 수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용유지류 •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햄류·소시지류(어육소시지 포함) • 축·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 •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먹는샘물 및 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색 페트병 •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가 사용된 페트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색 페트병 •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또는 접착제 미사용 •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 시행일 : '19.1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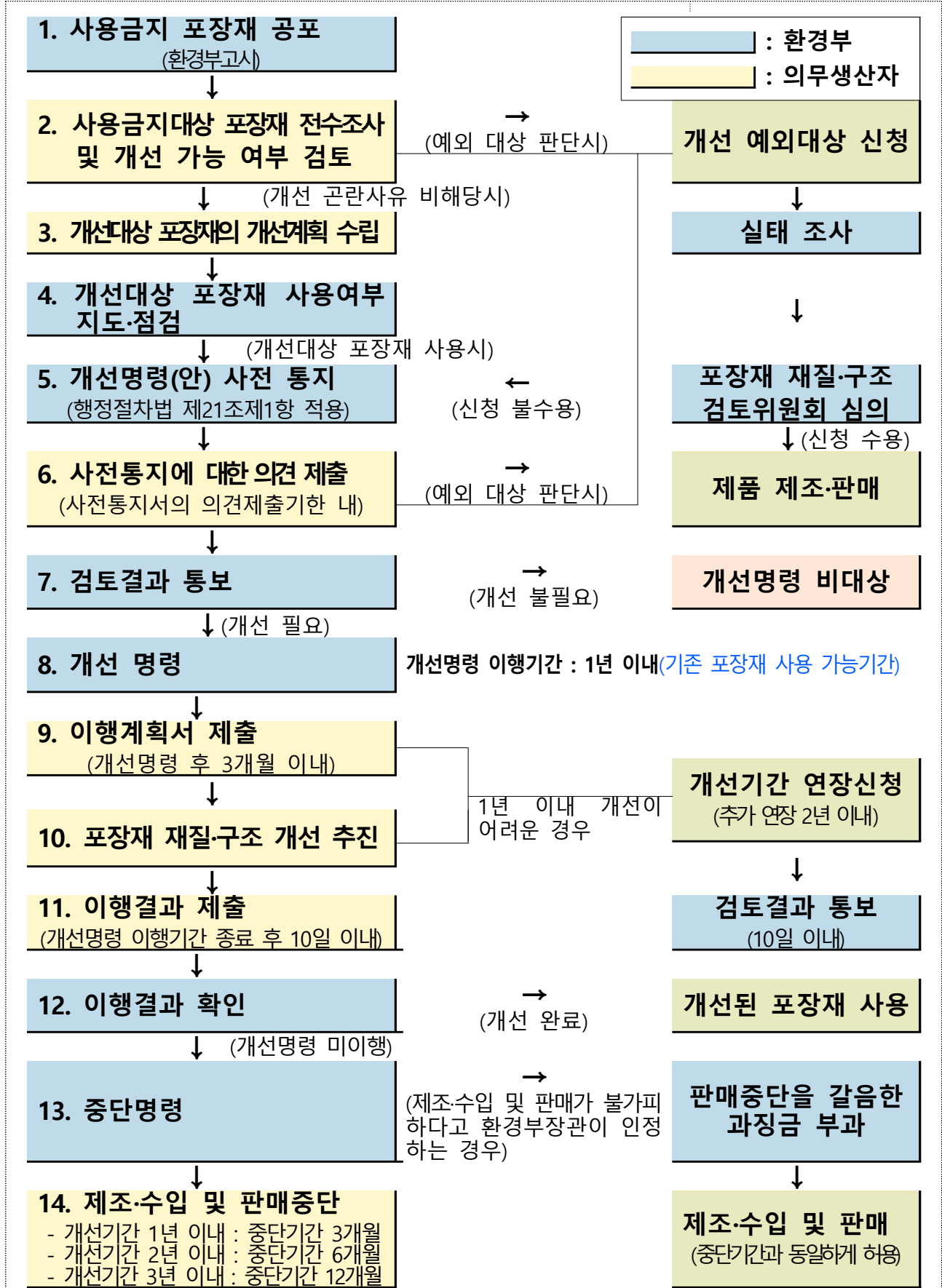
□ 개선 및 중단명령 대상

○ (개선명령) 의무생산자가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중단명령) 의무생산자가 개선기간 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단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 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절차



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사전 준비

□ 사용금지대상 포장재 사용 현황 조사

- (PVC) 사용금지대상 포장재와 금지 비대상 포장재로 구분
 - (금지대상)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 등에 PVC가 사용된 제품
 - (금지 비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제품
 - (먹는 샘물 및 음료) 페트병 포장재에 한하여 색상(무색, 유색), 라벨 방식(비접착식, 접착식) 및 접착식 라벨의 접착제 종류를 조사
 - (금지대상) 몸체가 유색인 페트병, 접착식 라벨의 일반 접착제
 - (금지 비대상) 몸체가 무색인 페트병,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또는 비접착식 라벨 부착 페트병
- *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점(점)착제

□ 개선 가능 여부 및 재질대체 등 개선방법 검토

- 사용금지대상 포장재에 대해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검토, 포장재 대체 재질 테스트, 제조 공정 변경 등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포장용기 및 부자재 공급업체 등과 사전 협력체계 구축
- 검토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상과 개선대상 포장재 예외 신청대상으로 구분

< 개선대상 포장재 예외 신청 기준 >

-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제품(PVC 포장재 사용 제품)
-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로 인정한 제품(PVC 포장재 사용 제품, 먹는 샘물 및 음료)
 - 제품의 기능 장애 발생 우려, 제조 공정 변경 곤란,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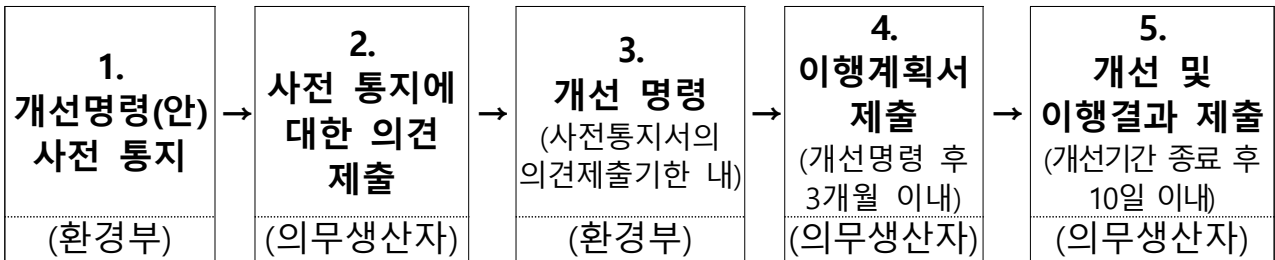
□ 개선계획 수립

- (주요내용) 개선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 제품명, 이행방법, 이행 완료 예정일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세부계획서) 개선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추진일정, 소요기간 및 예산, 개선방법 및 개선 후 등급 등
- (활용) 환경부장관의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명령(안) 통지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및 개선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여부 검토자료로 활용
 -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안)에 대한 사전 통지서 접수 시, 개선명령(안)의 내용 및 개선명령 이행기간 적정성 검토
 - 제조공정 변경 또는 타 법에 의한 포장재의 안전성 테스트 등 필요 시 개선명령 이행기간 연장 타당성 검토

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명령 및 이행

□ 개선 명령 및 이행 절차

- (환경부) 개선명령 내용, 개선기간 등이 포함된 개선명령안을 사전 통지하여 개선명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후, 개선명령서 통지
- (의무생산자)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 제출하고, 개선기간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 제출



□ 개선명령안 사전 통지

- (근거 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 사전 통지 내용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의견제출기한(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결정) 등

□ 개선명령

- (근거 법령) 자원재활용법 제3조의5제1항
- (명령권자) 환경부장관
- (양식)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 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서

명령번호 제	호		
대상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상제품	포장재 재질·구조	제품명	
	위반사항		
개선명령 내용	개선명령 이행기간		
	개선명령 내용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 장관 직인

다 개선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

□ 신청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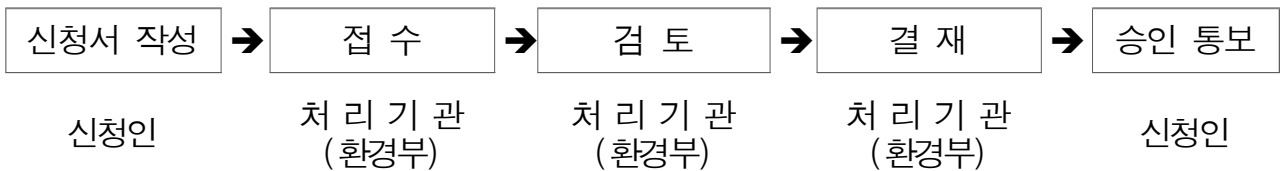
- 제조공정 변경 필요 등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 이행기간(1년 이내) 내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 당초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제외하고 2년 이내(당초 개선명령 이행기간까지 포함하여 최대 3년의 개선명령 이행기간 부여 가능)

□ 제출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처리 절차



□ 제출 양식

- 개선기간 연장 신청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 서식)

개선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개선명령번호	당초 개선명령 이행기간	변경 개선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환경부 장관 귀하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연장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라 개선대상 포장재 예외 인정 신청

□ 신청대상

-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한 PVC 재질 포장재 사용 제품
 - * 법적 근거: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3조제2항제1호바목
- 포장재 재질·구조 변경 시 제품의 기능장애 발생, 제품의 제조 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거나, 대체 재질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
 - * 법적 근거: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3조제2항제2호
 - (예시)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 시 제품의 변질 등 품질 관리에 애로가 있는 음료 제품

□ 처리 절차

- 의무생산자의 개선대상 제외 신청 → 접수(환경부) →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심의 → 환경부장관의 개선대상 예외 인정여부 결정

□ 제출 양식

-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문서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제출

포장재 종류	제품명	신청사유	비고
			신청사유 입증서류 별도 제출

- 포장재 종류는 PVC와 페트병으로 구분하여 작성
- 제품명은 개선대상 제품 중 예외 신청대상 제품을 기재하며, 신청대상 제품이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
- 신청사유는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또는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해당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

- 첨부 서류는 신청 제품의 포장재 출고량 등 일반 현황 및 신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첨부서류 예시 >

-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한 후 제품 품질 테스트 결과 및 테스트 조건, 타 재질 포장재로의 교체 곤란 사유 등
- 회수·재활용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전년도 출고량 규모, 회수재활용 규모, 소요 예산, 배출처, 회수·재활용 체계 등

□ 신청 시기

- 사용금지대상 포장재에 대한 검토 결과, 개선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 (개선명령안 미통지시) 법 시행일 이후 의무생산자가 신청 시기 판단
 - (개선명령안 통지시)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안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의견제출 기한 이내

3

제조·수입·판매 중단 명령

□ 중단명령 사유

- 환경부장관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서를 받고,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중단명령 기간 산정기준

구 분	중단기간
총 개선기간이 1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3개월
총 개선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6개월
총 개선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1년

- 다만, 아래 사유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정된 중단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음
 -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해당 제품이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

□ 제조·수입·판매 중단기간

- 중단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 될때까지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서

명령번호 제		호	
대상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중단명령 내용	중단명령 기간		
	포장재 재질·구조		
	제품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단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 장관 직인

4

중단명령을 받은 과징금 부과

□ 부과 대상

- 환경부 장관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조·수입·판매 중단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단 시 국민 건강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의무생산자가 중단명령을 받은 과징금의 부과를 희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과징금 부과를 희망할 경우에는 과징금 산출을 위한 포장재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

□ 부과금액 산정방법

- 10억원 이하(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text{과징금} = \text{제조·수입·판매 중단기간} \times \text{1일당 과징금}$$

*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단되는 기간으로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최대 1년)되며, 중단기간 1개월은 30개월로 봄

$$\text{1일당 과징금} = \text{1일당 출고·수입량} \times \text{재활용의무율} \times \text{재활용단위비용}$$

* 과징금 부과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전년도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360일로 나누어 환산(다만, 해당 연도 사업개시 또는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출고·수입량을 각각 90일 또는 30일로 나누어 1일당 출고·수입량으로 환산하여 적용)

** 자원재활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재활용비용 산정지수(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매년 고시)

□ 부과 및 납부절차

-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환경부 장관) →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부과 대상자)

가 질의·회신 사례

①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2 및 제9조의4에 따른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는?

-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한 모든 PVC·PVDC 재질의 포장재와 먹는 샘물 및 음료류의 유색 페트병 및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임

② 법 시행 전 PVC 재질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조·수입된 제품이 법 시행일('19.12.24) 이후 유통·판매가 금지되는지 여부?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③ 법 시행 전 다량의 PVC 재질 포장재를 구매하여 법 시행일('19.12.24) 이후 재고가 많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여부?

-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서상의 개선명령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
- * 1년 이내 부여, 의무생산자의 신청에 따라 2년의 범위내 추가 부여 가능

④ 개선 대상 음료류의 구체적인 범위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제9호 음료류에 해당되는 제품임
- ※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⑤ 개선대상 포장재도 재질·구조 평가 신청 및 평가결과를 표시
해야 하는지?

- 개선대상 포장재도 평가 신청 및 평가결과 표시 대상임

⑥ 개선대상 예외에 해당하는 햄류 등에 대해 별도의 예외 신청을
해야 하는지?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은
별도의 예외 신청 불필요

⑦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은?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4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처분 대
상임
- 제조·수입·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5에
따라 중단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⑧ 중단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은?

- 자원재활용법 제39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부과됨

나 용어의 정의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수축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을 1개 또는 여러개로 합하여 수축필름을 덮고, 이것을 가열 수축시켜 물츨을 고정 유지하는 포장방법
2	압박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제(tablet)나 캡슐의 포장형식으로 손가락 끝으로 세계 눌러 꺼내는 PTP(Press Through Pack) 포장시트
3	먹는 샘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로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 (샘물)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샘물로서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
4	음료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제9호에 해당되는 제품 -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6	의약외품 (醫藥外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7	건강기능 식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8	식용유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를 함유한 원료로부터 얻은 원료 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한 것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9	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한 것, 훈연,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식육의 고깃덩어리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 건조한 것이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
10	소시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한 것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저온에서 발효시켜 숙성 또는 건조처리한 것이거나, 또는 케이싱에 충전하여 냉장·냉동한 것(육함량 70% 이상, 전분 10% 이하의 것)
11	어육소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육이나 어육 및 식육을 염지하여 훈연한 것 또는 어육이나 어육 및 식육 등을 케이싱에 충전하여 열처리한 것 (다만, 어육의 함량이 식육의 함량보다 많아야 한다).
12	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포장육 및 양념육류(단, 양념육류의 경우 가열하지 않은 상태의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육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육함량 100%). - 양념육류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양념하거나 이를 가공한 것
13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원료 분류 상 민물어류, 회유어류, 해양어류, 어란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피낭류를 냉동, 염장, 건조, 절단 등에 대해 단순처리한 것 및 외형상 그 종류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모양과 색깔이 손상되지 않은 해조류

다 음료류의 종류

□ 다류

- (정의)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
- 식품 유형
 - (침출차)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
 - (액상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추출액, 농축액 또는 분말)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
 - (고형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의 기호성 식품

□ 커피

- (정의) 커피원두를 가공한 것이거나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 식품 유형
 - 볶은커피(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
 - 인스턴트커피(볶은커피의 가용성추출액을 건조한 것)
 - 조제커피, 액상커피(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고형분 0.5% 이상인 제품 포함)가 있음

□ 과일·채소류음료

- (정의) 과일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
- 식품 유형
 - (농축과·채즙 또는 농축과·채분) 과일즙, 채소즙 또는 이들을 혼합하여 50% 이하로 농축한 것 또는 이것을 분말화한 것(다만,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 (과·채주스) 과일 또는 채소를 압착, 분쇄, 착즙 등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얻은 과·채즙(농축과·채즙, 과·채즙 또는 과일분, 채소분, 과·채분을 환원한 과·채즙, 과·채퓨레·페이스트 포함)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과·채즙 95% 이상)
- (과·채음료)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또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 이상)

□ 탄산음료류

- (정의) 탄산가스를 함유한 탄산음료, 탄산수를 의미
- 식품 유형
 - (탄산음료)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 (탄산수)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

□ 두유류

- (정의) 두류 및 두류가공품의 추출물이거나 이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
- 식품 유형
 - (원액두유) 두류로부터 추출한 유액(두류고형분 7% 이상)을 의미
 - (가공두유) 원액두유나 두류가공품의 추출액에 과일·채소즙(과실퓨레 포함) 또는 유, 유가공품, 곡류분말 등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두류고형분 1.4% 이상) 또는 이를 분말화한 것(두류고형분 50% 이상)

□ 발효음료류

- (정의)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원료를 유산균, 효모 등 미생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발효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식품 유형
 - (유산균음료)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가공(살균을 포함한다)한 것

- (효모음료)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효모로 발효시켜 가공(살균을 포함한다)한 것
- (기타발효음료)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미생물 등으로 발효시켜 가공(살균을 포함한다)한 것

□ 인삼·홍삼음료

- (정의) 인삼, 홍삼 또는 가용성 인삼·홍삼성분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직접 음용하는 것

□ 기타음료

- (정의)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하거나 또는 동·식물성원료를 이용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품유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음료

○ 식품 유형

- (혼합음료) 먹는 물 또는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을 말한다.
- (음료베이스) 동·식물성원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먹는물 등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

라 햄·소시지류의 종류

□ 햄류(*축산물)

- (정의)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한 것, 훈연,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식육의 고깃덩어리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 건조한 것이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
- 식품 유형
 - (햄) 식육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뼈나 껍질이 있는 것도 포함).
 - (생햄) 식육의 부위를 염지한 것이나 이에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저온에서 훈연 또는 숙성·건조한 것(뼈나 껍질이 있는 것도 포함).
 - (프레스햄) 식육의 고깃덩어리를 염지한 것이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으로 육함량 75% 이상, 전분 8% 이하의 것

□ 소시지류(*축산물)

- (정의)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한 것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저온에서 발효시켜 숙성 또는 건조처리한 것이거나, 또는 케이싱에 충전하여 냉장·냉동한 것(육함량 70% 이상, 전분 10% 이하의 것).
- 식품 유형
 - (소시지) 식육(육함량 중 10% 미만의 알류를 혼합한 것도 포함)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건조시킨 것,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 또는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것
 - (발효소시지) 식육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저온에서 훈연 또는 훈연하지 않고 발효시켜 숙성 또는 건조처리한 것
 - (혼합소시지) 식육(전체 육함량 중 20% 미만의 어육 또는 알류를 혼합한 것도 포함)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건조시킨 것,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

마 식용유지류의 종류

□ 식품유형

- (콩기름(대두유)) 콩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 (옥수수기름(옥배유)) 옥수수의 배아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유채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 (미강유(현미유)) 미강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 (참기름) 참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참기름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 추출)로 추출한 초임계추출 참기름을 의미
- (추출참깨유) 참깨로부터 추출한 원료유지를 정제한 것
- (들기름) 들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들기름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 추출)로 추출한 초임계추출 들기름을 의미
- (추출들깨유) 들깨로부터 추출한 원료유지를 정제한 것
-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홍화씨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홍화유, 고올레산홍화유를 의미
- (해바라기유) 해바라기의 씨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해바라기유(압착해바라기유 포함), 고올레산해바라기유를 의미
- (목화씨기름(면실유)) 목화씨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목화씨기름, 목화씨샐러드유, 목화씨스테아린유를 의미

- (땅콩기름(낙화생유)) 땅콩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 (올리브유) 올리브과육을 물리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압착·여과하거나 정제한 것 또는 이를 혼합한 것
- (팜유류) 팜의 과육으로부터 채취한 팜유, 팜유를 분별한 팜올레인유 또는 팜스테아린유, 팜의 핵으로부터 채취한 팜핵유를 의미
- (야자유) 야자과육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 (고추씨기름) 고추씨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 (기타식물성유지) 단일 식물성 원료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또는 압착방법으로 착유하고 남은 박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 처리한 것. 다만, 다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기준·규격에 의함